트리븐 가흥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4-633-8898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영주시 거주자	경상북도(영주시 제외) 및 대구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11.27.(금)	2026.12.02.(수)	2026.12.03.(목)	2026.12.04.(금)	2026.12.10.(목)	2026.12.12.(토)~ 2026.12.18.(금)	2026.12.21.(월)~ 2026.12.23.(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11.2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트리븐 가흥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trivn-doosan-gaheung.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 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27.(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영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12.02.(수)	2026.12.03.(목)	2026.12.04.(금)	2026.12.10.(목)	2026.12.12.(토)~ 2026.12.18(금)	2026.12.21.(월)~ 2026.12.23.(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765, 766)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영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없음**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영주시 건축과 - 44611호(2026.11.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1059-10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6~29층 8개동 총 765세대

[특별공급 395세대(기관추천 70세대, 다자녀가구 76세대, 신혼부부 106세대, 노부모부양 23세대, 생애최초 50세대, 신생아 7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30년 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주차대수 : 지상 57대, 지하 1,069대 예정 총 1,126대 (근린생활시설 주차 2대 별도)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 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계		
2026000589	01	084.9772A	84A	84.9772	24.1682	109.1454	61.4454	170.5909	44.8743	301	30	30	45	9	21	30	165	136	**13**
	02	084.8065B	84B	84.8065	23.5126	108.3191	61.3220	169.6411	44.6246	113	12	11	17	3	8	11	62	51	**4**
	03	084.8909C	84C	84.8909	24.4511	109.3420	61.3830	170.7250	44.9098	271	26	27	41	8	19	27	148	123	**10**
	04	084.8894D	84D	84.8894	24.9998	109.8892	61.3819	171.2711	45.0533	23	2	2	3	1	2	2	12	11	**1**
	05	113.9804	113	113.9804	30.4765	144.4569	82.4171	226.8740	59.6799	57	-	6	-	2	-	-	8	49	**2**
	합계									**765**	**70**	**76**	**106**	**23**	**50**	**70**	**395**	**370**	**30**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9772A	084.8065B	084.8909C	084.8894D	113.9804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113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단지별,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을 기준으로 청약 순위별 조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서 동·호수를 추첨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호수는 청약한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되오니 단지 및 동·호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변경 불가합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신청물량이 공급물량에 미달한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세대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기타 공용면적은 상품성 개선 및 현장 여건 반영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 내 일부 발코니 초과 면적이 포함되어 산정되었으며, 면적 산출근거 등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 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자리에서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84C	84D	113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5	2	5	1	-	**13**
	장기복무 제대군인		5	2	5	-	-	**1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5	2	5	-	-	**12**
	장애인	영주시	3	1	2	-	-	**6**
		경상북도	3	1	2	-	-	**6**
		대구광역시	2	1	1	-	-	**4**
	중소기업 근로자		7	3	6	1	-	**1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0	11	27	2	6	**76**
신혼부부 특별공급			45	17	41	3	-	**10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9	3	8	1	2	**23**
생애최초 특별공급			21	8	19	2	-	**50**
신생아 특별공급			30	11	27	2	-	**70**
합 계			**165**	**62**	**148**	**12**	**8**	**39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표

(단위: 세대, 원)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동,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	2차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입주지정일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27.06.15.	27.12.15.	28.06.15.	28.12.15.	29.04.16.	29.08.16.	
84A	301	101동 2호	2층	1	128,870,000	333,130,000	-	**462,000,000**	10,000,000	13,1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161,700,000
			3층	1	131,660,000	340,340,000	-	**472,000,000**	10,000,000	13,6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165,200,000
			4층	1	132,500,000	342,500,000	-	**475,000,000**	10,000,000	13,75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166,250,000
			5층	1	133,340,000	344,660,000	-	**478,000,000**	10,000,000	13,9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167,300,000
			6층	1	134,170,000	346,830,000	-	**481,000,000**	10,000,000	14,05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168,350,000
			7층	1	135,010,000	348,990,000	-	**484,000,000**	10,000,000	14,2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169,400,000
			8층	1	135,850,000	351,150,000	-	**487,000,000**	10,000,000	14,35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70,450,000
			9층	1	136,680,000	353,320,000	-	**490,000,000**	10,000,000	14,5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71,500,000
			10층	1	137,520,000	355,480,000	-	**493,000,000**	10,000,000	14,65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72,550,000
			11층	1	137,800,000	356,200,000	-	**494,000,000**	10,000,000	14,7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172,900,000
			12층	1	138,080,000	356,920,000	-	**495,000,000**	10,000,000	14,75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173,250,000
			13층	1	138,360,000	357,640,000	-	**496,000,000**	10,000,000	14,8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173,600,000
			14층	1	138,640,000	358,360,000	-	**497,000,000**	10,000,000	14,85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173,950,000
			15층	1	138,920,000	359,080,000	-	**498,000,000**	10,000,000	14,9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174,300,000
			16층	1	139,190,000	359,810,000	-	**499,000,000**	10,000,000	14,95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174,650,000
			17층	1	139,470,000	360,530,000	-	**500,000,000**	10,000,000	15,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175,000,000
			18층	1	139,750,000	361,250,000	-	**501,000,000**	10,000,000	15,05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175,350,000
			19층	1	140,030,000	361,970,000	-	**502,000,000**	10,000,000	15,1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75,700,000
			20층	1	140,310,000	362,690,000	-	**503,000,000**	10,000,000	15,15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176,050,000
			21층	1	140,590,000	363,410,000	-	**504,000,000**	10,000,000	15,2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176,400,000
			22층	1	140,870,000	364,130,000	-	**505,000,000**	10,000,000	15,25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176,750,000
			23층	1	141,150,000	364,850,000	-	**506,000,000**	10,000,000	15,3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177,100,000
			24층	1	141,430,000	365,570,000	-	**507,000,000**	10,000,000	15,35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177,450,000
			25층	1	141,710,000	366,290,000	-	**508,000,000**	10,000,000	15,4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177,800,000
			26층	1	141,980,000	367,020,000	-	**509,000,000**	10,000,000	15,45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78,150,000

			27층	1	142,260,000	367,740,000	-	**510,000,000**	10,000,000	15,5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78,500,000
			28층	1	142,540,000	368,460,000	-	**511,000,000**	10,000,000	15,55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178,850,000
			29층	1	142,820,000	369,180,000	-	**512,000,000**	10,000,000	15,6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179,200,000
		101동 3호	2층	1	133,060,000	343,940,000	-	**477,000,000**	10,000,000	13,85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66,950,000
			3층	1	135,850,000	351,150,000	-	**487,000,000**	10,000,000	14,35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70,450,000
			4층	1	136,680,000	353,320,000	-	**490,000,000**	10,000,000	14,5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71,500,000
			5층	1	137,520,000	355,480,000	-	**493,000,000**	10,000,000	14,65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72,550,000
			6층	1	138,360,000	357,640,000	-	**496,000,000**	10,000,000	14,8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173,600,000
			7층	1	139,190,000	359,810,000	-	**499,000,000**	10,000,000	14,95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174,650,000
			8층	1	140,030,000	361,970,000	-	**502,000,000**	10,000,000	15,1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75,700,000
			9층	1	140,870,000	364,130,000	-	**505,000,000**	10,000,000	15,25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176,750,000
			10층	1	141,710,000	366,290,000	-	**508,000,000**	10,000,000	15,4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177,800,000
			11층	1	141,980,000	367,020,000	-	**509,000,000**	10,000,000	15,45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78,150,000
			12층	1	142,260,000	367,740,000	-	**510,000,000**	10,000,000	15,5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78,500,000
			13층	1	142,540,000	368,460,000	-	**511,000,000**	10,000,000	15,55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178,850,000
			14층	1	142,820,000	369,180,000	-	**512,000,000**	10,000,000	15,6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179,200,000
			15층	1	143,100,000	369,900,000	-	**513,000,000**	10,000,000	15,65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79,550,000
			16층	1	143,380,000	370,620,000	-	**514,000,000**	10,000,000	15,7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179,900,000
		101동 4호, 108동 3호	1층	2	127,480,000	329,520,000	-	**457,000,000**	10,000,000	12,85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159,950,000
			2층	2	133,060,000	343,940,000	-	**477,000,000**	10,000,000	13,85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66,950,000
			3층	2	135,850,000	351,150,000	-	**487,000,000**	10,000,000	14,35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70,450,000
			4층	2	136,680,000	353,320,000	-	**490,000,000**	10,000,000	14,5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71,500,000
			5층	2	137,520,000	355,480,000	-	**493,000,000**	10,000,000	14,65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72,550,000
			6층	2	138,360,000	357,640,000	-	**496,000,000**	10,000,000	14,8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173,600,000
			7층	2	139,190,000	359,810,000	-	**499,000,000**	10,000,000	14,95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174,650,000
			8층	2	140,030,000	361,970,000	-	**502,000,000**	10,000,000	15,1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75,700,000
			9층	2	140,870,000	364,130,000	-	**505,000,000**	10,000,000	15,25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176,750,000
			10층	2	141,710,000	366,290,000	-	**508,000,000**	10,000,000	15,4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177,800,000
			11층	2	141,980,000	367,020,000	-	**509,000,000**	10,000,000	15,45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78,150,000
			12층	2	142,260,000	367,740,000	-	**510,000,000**	10,000,000	15,5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78,500,000
			13층	2	142,540,000	368,460,000	-	**511,000,000**	10,000,000	15,55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178,850,000
			14층	2	142,820,000	369,180,000	-	**512,000,000**	10,000,000	15,6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179,200,000
			15층	2	143,100,000	369,900,000	-	**513,000,000**	10,000,000	15,65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79,550,000
			16층	2	143,380,000	370,620,000	-	**514,000,000**	10,000,000	15,7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179,900,000
		102동 2호	2층	1	126,640,000	327,360,000	-	**454,000,000**	10,000,000	12,7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158,900,000
			3층	1	129,990,000	336,010,000	-	**466,000,000**	10,000,000	13,3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163,100,000
			4층	1	131,380,000	339,620,000	-	**471,000,000**	10,000,000	13,55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164,850,000
			5층	1	132,780,000	343,220,000	-	**476,000,000**	10,000,000	13,8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166,600,000
			6층	1	134,170,000	346,830,000	-	**481,000,000**	10,000,000	14,05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168,350,000
			7층	1	135,010,000	348,990,000	-	**484,000,000**	10,000,000	14,2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169,400,000
			8층	1	135,850,000	351,150,000	-	**487,000,000**	10,000,000	14,35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70,450,000
			9층	1	136,680,000	353,320,000	-	**490,000,000**	10,000,000	14,5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71,500,000
			10층	1	137,520,000	355,480,000	-	**493,000,000**	10,000,000	14,65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72,550,000
			11층	1	137,800,000	356,200,000	-	**494,000,000**	10,000,000	14,7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172,900,000
			12층	1	138,080,000	356,920,000	-	**495,000,000**	10,000,000	14,75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173,250,000
			13층	1	138,360,000	357,640,000	-	**496,000,000**	10,000,000	14,8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173,600,000
			14층	1	138,640,000	358,360,000	-	**497,000,000**	10,000,000	14,85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173,950,000
			15층	1	138,920,000	359,080,000	-	**498,000,000**	10,000,000	14,9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174,300,000
			16층	1	139,190,000	359,810,000	-	**499,000,000**	10,000,000	14,95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174,650,000
			17층	1	139,470,000	360,530,000	-	**500,000,000**	10,000,000	15,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175,000,000
			18층	1	139,750,000	361,250,000	-	**501,000,000**	10,000,000	15,05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175,350,000
			19층	1	140,030,000	361,970,000	-	**502,000,000**	10,000,000	15,1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75,700,000
			20층	1	140,310,000	362,690,000	-	**503,000,000**	10,000,000	15,15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50,300,000	176,050,000
			21층	1	140,590,000	363,410,000	-	**504,000,000**	10,000,000	15,2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176,400,000
			22층	1	140,870,000	364,130,000	-	**505,000,000**	10,000,000	15,25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176,750,000
			23층	1	141,150,000	364,850,000	-	**506,000,000**	10,000,000	15,3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177,100,000
			24층	1	141,430,000	365,570,000	-	**507,000,000**	10,000,000	15,35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177,450,000
			25층	1	141,710,000	366,290,000	-	**508,000,000**	10,000,000	15,4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177,800,000
			26층	1	141,980,000	367,020,000	-	**509,000,000**	10,000,000	15,45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78,150,000

			27층	1	142,260,000	367,740,000	-	**510,000,000**	10,000,000	15,5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78,500,000
			28층	1	142,540,000	368,460,000	-	**511,000,000**	10,000,000	15,55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178,850,000
			29층	1	142,820,000	369,180,000	-	**512,000,000**	10,000,000	15,6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179,200,000
		103동 3호, 103동 4호, 106동 2호	2층	3	133,060,000	343,940,000	-	**477,000,000**	10,000,000	13,85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66,950,000
			3층	3	135,850,000	351,150,000	-	**487,000,000**	10,000,000	14,35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70,450,000
			4층	3	136,680,000	353,320,000	-	**490,000,000**	10,000,000	14,5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71,500,000
			5층	3	137,520,000	355,480,000	-	**493,000,000**	10,000,000	14,65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72,550,000
			6층	3	138,360,000	357,640,000	-	**496,000,000**	10,000,000	14,8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173,600,000
			7층	3	139,190,000	359,810,000	-	**499,000,000**	10,000,000	14,95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174,650,000
			8층	3	140,030,000	361,970,000	-	**502,000,000**	10,000,000	15,1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75,700,000
			9층	3	140,870,000	364,130,000	-	**505,000,000**	10,000,000	15,25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176,750,000
			10층	3	141,710,000	366,290,000	-	**508,000,000**	10,000,000	15,4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177,800,000
			11층	3	141,980,000	367,020,000	-	**509,000,000**	10,000,000	15,45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78,150,000
			12층	3	142,260,000	367,740,000	-	**510,000,000**	10,000,000	15,5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78,500,000
			13층	3	142,540,000	368,460,000	-	**511,000,000**	10,000,000	15,55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178,850,000
			14층	3	142,820,000	369,180,000	-	**512,000,000**	10,000,000	15,6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179,200,000
			15층	3	143,100,000	369,900,000	-	**513,000,000**	10,000,000	15,65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79,550,000
			16층	3	143,380,000	370,620,000	-	**514,000,000**	10,000,000	15,7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179,900,000
			17층	3	143,660,000	371,340,000	-	**515,000,000**	10,000,000	15,75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80,250,000
			18층	3	143,940,000	372,060,000	-	**516,000,000**	10,000,000	15,8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180,600,000
			19층	3	144,220,000	372,780,000	-	**517,000,000**	10,000,000	15,85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80,950,000
			20층	3	144,490,000	373,510,000	-	**518,000,000**	10,000,000	15,9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81,300,000
			21층	3	144,770,000	374,230,000	-	**519,000,000**	10,000,000	15,95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181,650,000
			22층	3	145,050,000	374,950,000	-	**520,000,000**	10,000,000	16,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82,000,000
			23층	3	145,330,000	375,670,000	-	**521,000,000**	10,000,000	16,05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182,350,000
			24층	3	145,610,000	376,390,000	-	**522,000,000**	10,000,000	16,1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182,700,000
			25층	3	145,890,000	377,110,000	-	**523,000,000**	10,000,000	16,15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183,050,000
			26층	3	146,170,000	377,830,000	-	**524,000,000**	10,000,000	16,2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183,400,000
			27층	3	146,450,000	378,550,000	-	**525,000,000**	10,000,000	16,25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83,750,000
			28층	3	146,730,000	379,270,000	-	**526,000,000**	10,000,000	16,3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84,100,000
			29층	3	147,010,000	379,990,000	-	**527,000,000**	10,000,000	16,35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184,450,000
		105동 2호	1층	1	127,480,000	329,520,000	-	**457,000,000**	10,000,000	12,85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159,950,000
			2층	1	133,060,000	343,940,000	-	**477,000,000**	10,000,000	13,85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66,950,000
			3층	1	135,850,000	351,150,000	-	**487,000,000**	10,000,000	14,35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70,450,000
			4층	1	136,680,000	353,320,000	-	**490,000,000**	10,000,000	14,5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71,500,000
			5층	1	137,520,000	355,480,000	-	**493,000,000**	10,000,000	14,65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72,550,000
			6층	1	138,360,000	357,640,000	-	**496,000,000**	10,000,000	14,8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173,600,000
			7층	1	139,190,000	359,810,000	-	**499,000,000**	10,000,000	14,95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174,650,000
			8층	1	140,030,000	361,970,000	-	**502,000,000**	10,000,000	15,1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75,700,000
			9층	1	140,870,000	364,130,000	-	**505,000,000**	10,000,000	15,25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176,750,000
			10층	1	141,710,000	366,290,000	-	**508,000,000**	10,000,000	15,4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177,800,000
			11층	1	141,980,000	367,020,000	-	**509,000,000**	10,000,000	15,45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78,150,000
			12층	1	142,260,000	367,740,000	-	**510,000,000**	10,000,000	15,5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78,500,000
			13층	1	142,540,000	368,460,000	-	**511,000,000**	10,000,000	15,55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178,850,000
			14층	1	142,820,000	369,180,000	-	**512,000,000**	10,000,000	15,6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179,200,000
			15층	1	143,100,000	369,900,000	-	**513,000,000**	10,000,000	15,65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79,550,000
			16층	1	143,380,000	370,620,000	-	**514,000,000**	10,000,000	15,7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179,900,000
			17층	1	143,660,000	371,340,000	-	**515,000,000**	10,000,000	15,75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80,250,000
			18층	1	143,940,000	372,060,000	-	**516,000,000**	10,000,000	15,8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180,600,000
			19층	1	144,220,000	372,780,000	-	**517,000,000**	10,000,000	15,85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80,950,000
			20층	1	144,490,000	373,510,000	-	**518,000,000**	10,000,000	15,9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81,300,000
			21층	1	144,770,000	374,230,000	-	**519,000,000**	10,000,000	15,95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181,650,000
			22층	1	145,050,000	374,950,000	-	**520,000,000**	10,000,000	16,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82,000,000
			23층	1	145,330,000	375,670,000	-	**521,000,000**	10,000,000	16,05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182,350,000
			24층	1	145,610,000	376,390,000	-	**522,000,000**	10,000,000	16,1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182,700,000
			25층	1	145,890,000	377,110,000	-	**523,000,000**	10,000,000	16,15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183,050,000
			26층	1	146,170,000	377,830,000	-	**524,000,000**	10,000,000	16,2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183,400,000
			27층	1	146,450,000	378,550,000	-	**525,000,000**	10,000,000	16,25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83,750,000
			28층	1	146,730,000	379,270,000	-	**526,000,000**	10,000,000	16,3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84,100,000

			29층	1	147,010,000	379,990,000	-	**527,000,000**	10,000,000	16,35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184,450,000
		107동 3호	2층	1	130,830,000	338,170,000	-	**469,000,000**	10,000,000	13,45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164,150,000
			3층	1	134,170,000	346,830,000	-	**481,000,000**	10,000,000	14,05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168,350,000
			4층	1	135,570,000	350,430,000	-	**486,000,000**	10,000,000	14,3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70,100,000
			5층	1	136,960,000	354,040,000	-	**491,000,000**	10,000,000	14,55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171,850,000
			6층	1	138,360,000	357,640,000	-	**496,000,000**	10,000,000	14,8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173,600,000
			7층	1	139,190,000	359,810,000	-	**499,000,000**	10,000,000	14,95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174,650,000
			8층	1	140,030,000	361,970,000	-	**502,000,000**	10,000,000	15,1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75,700,000
			9층	1	140,870,000	364,130,000	-	**505,000,000**	10,000,000	15,25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176,750,000
			10층	1	141,710,000	366,290,000	-	**508,000,000**	10,000,000	15,4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177,800,000
			11층	1	141,980,000	367,020,000	-	**509,000,000**	10,000,000	15,45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78,150,000
			12층	1	142,260,000	367,740,000	-	**510,000,000**	10,000,000	15,5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78,500,000
			13층	1	142,540,000	368,460,000	-	**511,000,000**	10,000,000	15,55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178,850,000
			14층	1	142,820,000	369,180,000	-	**512,000,000**	10,000,000	15,6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179,200,000
			15층	1	143,100,000	369,900,000	-	**513,000,000**	10,000,000	15,65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79,550,000
			16층	1	143,380,000	370,620,000	-	**514,000,000**	10,000,000	15,7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179,900,000
			17층	1	143,660,000	371,340,000	-	**515,000,000**	10,000,000	15,75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80,250,000
			18층	1	143,940,000	372,060,000	-	**516,000,000**	10,000,000	15,8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180,600,000
			19층	1	144,220,000	372,780,000	-	**517,000,000**	10,000,000	15,85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80,950,000
			20층	1	144,490,000	373,510,000	-	**518,000,000**	10,000,000	15,9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81,300,000
			21층	1	144,770,000	374,230,000	-	**519,000,000**	10,000,000	15,95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181,650,000
			22층	1	145,050,000	374,950,000	-	**520,000,000**	10,000,000	16,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82,000,000
			23층	1	145,330,000	375,670,000	-	**521,000,000**	10,000,000	16,05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182,350,000
			24층	1	145,610,000	376,390,000	-	**522,000,000**	10,000,000	16,1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182,700,000
			25층	1	145,890,000	377,110,000	-	**523,000,000**	10,000,000	16,15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183,050,000
			26층	1	146,170,000	377,830,000	-	**524,000,000**	10,000,000	16,2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183,400,000
			27층	1	146,450,000	378,550,000	-	**525,000,000**	10,000,000	16,25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83,750,000
			28층	1	146,730,000	379,270,000	-	**526,000,000**	10,000,000	16,3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84,100,000
		108동 1호	1층	1	127,480,000	329,520,000	-	**457,000,000**	10,000,000	12,85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159,950,000
			2층	1	133,060,000	343,940,000	-	**477,000,000**	10,000,000	13,85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66,950,000
			3층	1	135,850,000	351,150,000	-	**487,000,000**	10,000,000	14,35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70,450,000
			4층	1	136,680,000	353,320,000	-	**490,000,000**	10,000,000	14,5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71,500,000
			5층	1	137,520,000	355,480,000	-	**493,000,000**	10,000,000	14,65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72,550,000
			6층	1	138,360,000	357,640,000	-	**496,000,000**	10,000,000	14,8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173,600,000
			7층	1	139,190,000	359,810,000	-	**499,000,000**	10,000,000	14,95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174,650,000
			8층	1	140,030,000	361,970,000	-	**502,000,000**	10,000,000	15,1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75,700,000
			9층	1	140,870,000	364,130,000	-	**505,000,000**	10,000,000	15,25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176,750,000
			10층	1	141,710,000	366,290,000	-	**508,000,000**	10,000,000	15,4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177,800,000
			11층	1	141,980,000	367,020,000	-	**509,000,000**	10,000,000	15,45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78,150,000
			12층	1	142,260,000	367,740,000	-	**510,000,000**	10,000,000	15,5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78,500,000
			13층	1	142,540,000	368,460,000	-	**511,000,000**	10,000,000	15,55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178,850,000
			14층	1	142,820,000	369,180,000	-	**512,000,000**	10,000,000	15,6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179,200,000
			15층	1	143,100,000	369,900,000	-	**513,000,000**	10,000,000	15,65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79,550,000
			16층	1	143,380,000	370,620,000	-	**514,000,000**	10,000,000	15,7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179,900,000
			17층	1	143,660,000	371,340,000	-	**515,000,000**	10,000,000	15,75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80,250,000
			18층	1	143,940,000	372,060,000	-	**516,000,000**	10,000,000	15,8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180,600,000
			19층	1	144,220,000	372,780,000	-	**517,000,000**	10,000,000	15,85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80,950,000
			20층	1	144,490,000	373,510,000	-	**518,000,000**	10,000,000	15,9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81,300,000
			21층	1	144,770,000	374,230,000	-	**519,000,000**	10,000,000	15,95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181,650,000
			22층	1	145,050,000	374,950,000	-	**520,000,000**	10,000,000	16,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82,000,000
		108동 2호	2층	1	133,060,000	343,940,000	-	**477,000,000**	10,000,000	13,85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66,950,000
			3층	1	135,850,000	351,150,000	-	**487,000,000**	10,000,000	14,35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70,450,000
			4층	1	136,680,000	353,320,000	-	**490,000,000**	10,000,000	14,5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71,500,000
			5층	1	137,520,000	355,480,000	-	**493,000,000**	10,000,000	14,65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72,550,000
			6층	1	138,360,000	357,640,000	-	**496,000,000**	10,000,000	14,8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173,600,000
			7층	1	139,190,000	359,810,000	-	**499,000,000**	10,000,000	14,95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174,650,000
			8층	1	140,030,000	361,970,000	-	**502,000,000**	10,000,000	15,1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75,700,000
			9층	1	140,870,000	364,130,000	-	**505,000,000**	10,000,000	15,25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176,750,000
			10층	1	141,710,000	366,290,000	-	**508,000,000**	10,000,000	15,4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177,800,000

			11층	1	141,980,000	367,020,000	-	**509,000,000**	10,000,000	15,45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78,150,000
			12층	1	142,260,000	367,740,000	-	**510,000,000**	10,000,000	15,5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78,500,000
			13층	1	142,540,000	368,460,000	-	**511,000,000**	10,000,000	15,55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178,850,000
			14층	1	142,820,000	369,180,000	-	**512,000,000**	10,000,000	15,6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179,200,000
			15층	1	143,100,000	369,900,000	-	**513,000,000**	10,000,000	15,65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79,550,000
			16층	1	143,380,000	370,620,000	-	**514,000,000**	10,000,000	15,7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179,900,000
			17층	1	143,660,000	371,340,000	-	**515,000,000**	10,000,000	15,75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80,250,000
			18층	1	143,940,000	372,060,000	-	**516,000,000**	10,000,000	15,8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180,600,000
			19층	1	144,220,000	372,780,000	-	**517,000,000**	10,000,000	15,85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80,950,000
			20층	1	144,490,000	373,510,000	-	**518,000,000**	10,000,000	15,9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81,300,000
			21층	1	144,770,000	374,230,000	-	**519,000,000**	10,000,000	15,95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181,650,000
			22층	1	145,050,000	374,950,000	-	**520,000,000**	10,000,000	16,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82,000,000
		108동 4호	2층	1	133,060,000	343,940,000	-	**477,000,000**	10,000,000	13,85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66,950,000
			3층	1	135,850,000	351,150,000	-	**487,000,000**	10,000,000	14,35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70,450,000
			4층	1	136,680,000	353,320,000	-	**490,000,000**	10,000,000	14,5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71,500,000
			5층	1	137,520,000	355,480,000	-	**493,000,000**	10,000,000	14,65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72,550,000
			6층	1	138,360,000	357,640,000	-	**496,000,000**	10,000,000	14,8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173,600,000
			7층	1	139,190,000	359,810,000	-	**499,000,000**	10,000,000	14,95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174,650,000
			8층	1	140,030,000	361,970,000	-	**502,000,000**	10,000,000	15,1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75,700,000
			9층	1	140,870,000	364,130,000	-	**505,000,000**	10,000,000	15,25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176,750,000
			10층	1	141,710,000	366,290,000	-	**508,000,000**	10,000,000	15,4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177,800,000
			11층	1	141,980,000	367,020,000	-	**509,000,000**	10,000,000	15,45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78,150,000
			12층	1	142,260,000	367,740,000	-	**510,000,000**	10,000,000	15,5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78,500,000
			13층	1	142,540,000	368,460,000	-	**511,000,000**	10,000,000	15,55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51,100,000	178,850,000
			14층	1	142,820,000	369,180,000	-	**512,000,000**	10,000,000	15,6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179,200,000
			15층	1	143,100,000	369,900,000	-	**513,000,000**	10,000,000	15,65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79,550,000
			16층	1	143,380,000	370,620,000	-	**514,000,000**	10,000,000	15,7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51,400,000	179,900,000
84B	113	102동 3호	2층	1	121,060,000	312,940,000	-	**434,000,000**	10,000,000	11,7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151,900,000
			3층	1	124,410,000	321,590,000	-	**446,000,000**	10,000,000	12,3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44,600,000	156,100,000
			4층	1	125,810,000	325,190,000	-	**451,000,000**	10,000,000	12,55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157,850,000
			5층	1	127,200,000	328,800,000	-	**456,000,000**	10,000,000	12,8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159,600,000
			6층	1	128,600,000	332,400,000	-	**461,000,000**	10,000,000	13,05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161,350,000
			7층	1	129,430,000	334,570,000	-	**464,000,000**	10,000,000	13,2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162,400,000
			8층	1	130,270,000	336,730,000	-	**467,000,000**	10,000,000	13,35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163,450,000
			9층	1	131,110,000	338,890,000	-	**470,000,000**	10,000,000	13,5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164,500,000
			10층	1	131,940,000	341,060,000	-	**473,000,000**	10,000,000	13,65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165,550,000
			11층	1	132,220,000	341,780,000	-	**474,000,000**	10,000,000	13,7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165,900,000
			12층	1	132,500,000	342,500,000	-	**475,000,000**	10,000,000	13,75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166,250,000
			13층	1	132,780,000	343,220,000	-	**476,000,000**	10,000,000	13,8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166,600,000
			14층	1	133,060,000	343,940,000	-	**477,000,000**	10,000,000	13,85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66,950,000
			15층	1	133,340,000	344,660,000	-	**478,000,000**	10,000,000	13,9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167,300,000
			16층	1	133,620,000	345,380,000	-	**479,000,000**	10,000,000	13,95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167,650,000
			17층	1	133,900,000	346,100,000	-	**480,000,000**	10,000,000	14,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168,000,000
			18층	1	134,170,000	346,830,000	-	**481,000,000**	10,000,000	14,05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168,350,000
			19층	1	134,450,000	347,550,000	-	**482,000,000**	10,000,000	14,1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168,700,000
			20층	1	134,730,000	348,270,000	-	**483,000,000**	10,000,000	14,15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169,050,000
			21층	1	135,010,000	348,990,000	-	**484,000,000**	10,000,000	14,2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169,400,000
			22층	1	135,290,000	349,710,000	-	**485,000,000**	10,000,000	14,25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169,750,000
			23층	1	135,570,000	350,430,000	-	**486,000,000**	10,000,000	14,3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70,100,000
			24층	1	135,850,000	351,150,000	-	**487,000,000**	10,000,000	14,35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70,450,000
			25층	1	136,130,000	351,870,000	-	**488,000,000**	10,000,000	14,4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170,800,000
			26층	1	136,410,000	352,590,000	-	**489,000,000**	10,000,000	14,45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171,150,000
			27층	1	136,680,000	353,320,000	-	**490,000,000**	10,000,000	14,5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71,500,000
			28층	1	136,960,000	354,040,000	-	**491,000,000**	10,000,000	14,55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171,850,000
			29층	1	137,240,000	354,760,000	-	**492,000,000**	10,000,000	14,6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172,200,000
		103동 2호	1층	1	117,720,000	304,280,000	-	**422,000,000**	10,000,000	11,1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147,700,000
			2층	1	123,300,000	318,700,000	-	**442,000,000**	10,000,000	12,1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154,700,000
			3층	1	126,080,000	325,920,000	-	**452,000,000**	10,000,000	12,6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158,200,000
			4층	1	126,920,000	328,080,000	-	**455,000,000**	10,000,000	12,75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159,250,000

		5층	1	127,760,000	330,240,000	-	**458,000,000**	10,000,000	12,9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160,300,000
		6층	1	128,600,000	332,400,000	-	**461,000,000**	10,000,000	13,05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161,350,000
		7층	1	129,430,000	334,570,000	-	**464,000,000**	10,000,000	13,2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162,400,000
		8층	1	130,270,000	336,730,000	-	**467,000,000**	10,000,000	13,35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46,700,000	163,450,000
		9층	1	131,110,000	338,890,000	-	**470,000,000**	10,000,000	13,5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164,500,000
		10층	1	131,940,000	341,060,000	-	**473,000,000**	10,000,000	13,65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47,300,000	165,550,000
		11층	1	132,220,000	341,780,000	-	**474,000,000**	10,000,000	13,7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165,900,000
		12층	1	132,500,000	342,500,000	-	**475,000,000**	10,000,000	13,75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166,250,000
		13층	1	132,780,000	343,220,000	-	**476,000,000**	10,000,000	13,8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166,600,000
		14층	1	133,060,000	343,940,000	-	**477,000,000**	10,000,000	13,85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66,950,000
		15층	1	133,340,000	344,660,000	-	**478,000,000**	10,000,000	13,9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47,800,000	167,300,000
		16층	1	133,620,000	345,380,000	-	**479,000,000**	10,000,000	13,95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47,900,000	167,650,000
		17층	1	133,900,000	346,100,000	-	**480,000,000**	10,000,000	14,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168,000,000
		18층	1	134,170,000	346,830,000	-	**481,000,000**	10,000,000	14,05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168,350,000
		19층	1	134,450,000	347,550,000	-	**482,000,000**	10,000,000	14,1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168,700,000
		20층	1	134,730,000	348,270,000	-	**483,000,000**	10,000,000	14,15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169,050,000
		21층	1	135,010,000	348,990,000	-	**484,000,000**	10,000,000	14,2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169,400,000
		22층	1	135,290,000	349,710,000	-	**485,000,000**	10,000,000	14,25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169,750,000
		23층	1	135,570,000	350,430,000	-	**486,000,000**	10,000,000	14,3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70,100,000
		24층	1	135,850,000	351,150,000	-	**487,000,000**	10,000,000	14,35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70,450,000
		25층	1	136,130,000	351,870,000	-	**488,000,000**	10,000,000	14,4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170,800,000
		26층	1	136,410,000	352,590,000	-	**489,000,000**	10,000,000	14,45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171,150,000
		27층	1	136,680,000	353,320,000	-	**490,000,000**	10,000,000	14,5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71,500,000
		28층	1	136,960,000	354,040,000	-	**491,000,000**	10,000,000	14,55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171,850,000
	106동 3호	1층	1	116,880,000	302,120,000	-	**419,000,000**	10,000,000	10,95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146,650,000
		2층	1	123,020,000	317,980,000	-	**441,000,000**	10,000,000	12,05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154,350,000
		3층	1	126,360,000	326,640,000	-	**453,000,000**	10,000,000	12,65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158,550,000
		4층	1	127,760,000	330,240,000	-	**458,000,000**	10,000,000	12,9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160,300,000
		5층	1	129,150,000	333,850,000	-	**463,000,000**	10,000,000	13,15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162,050,000
		6층	1	130,550,000	337,450,000	-	**468,000,000**	10,000,000	13,4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163,800,000
		7층	1	131,380,000	339,620,000	-	**471,000,000**	10,000,000	13,55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164,850,000
		8층	1	132,220,000	341,780,000	-	**474,000,000**	10,000,000	13,7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165,900,000
		9층	1	133,060,000	343,940,000	-	**477,000,000**	10,000,000	13,85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66,950,000
		10층	1	133,900,000	346,100,000	-	**480,000,000**	10,000,000	14,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168,000,000
		11층	1	134,170,000	346,830,000	-	**481,000,000**	10,000,000	14,05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168,350,000
		12층	1	134,450,000	347,550,000	-	**482,000,000**	10,000,000	14,1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168,700,000
		13층	1	134,730,000	348,270,000	-	**483,000,000**	10,000,000	14,15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169,050,000
		14층	1	135,010,000	348,990,000	-	**484,000,000**	10,000,000	14,2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169,400,000
		15층	1	135,290,000	349,710,000	-	**485,000,000**	10,000,000	14,25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169,750,000
		16층	1	135,570,000	350,430,000	-	**486,000,000**	10,000,000	14,3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70,100,000
		17층	1	135,850,000	351,150,000	-	**487,000,000**	10,000,000	14,35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70,450,000
		18층	1	136,130,000	351,870,000	-	**488,000,000**	10,000,000	14,4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170,800,000
		19층	1	136,410,000	352,590,000	-	**489,000,000**	10,000,000	14,45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171,150,000
		20층	1	136,680,000	353,320,000	-	**490,000,000**	10,000,000	14,5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71,500,000
		21층	1	136,960,000	354,040,000	-	**491,000,000**	10,000,000	14,55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171,850,000
		22층	1	137,240,000	354,760,000	-	**492,000,000**	10,000,000	14,6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172,200,000
		23층	1	137,520,000	355,480,000	-	**493,000,000**	10,000,000	14,65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72,550,000
		24층	1	137,800,000	356,200,000	-	**494,000,000**	10,000,000	14,7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172,900,000
		25층	1	138,080,000	356,920,000	-	**495,000,000**	10,000,000	14,75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173,250,000
		26층	1	138,360,000	357,640,000	-	**496,000,000**	10,000,000	14,8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173,600,000
		27층	1	138,640,000	358,360,000	-	**497,000,000**	10,000,000	14,85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173,950,000
		28층	1	138,920,000	359,080,000	-	**498,000,000**	10,000,000	14,9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174,300,000
		29층	1	139,190,000	359,810,000	-	**499,000,000**	10,000,000	14,95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174,650,000
	107동 2호	2층	1	123,020,000	317,980,000	-	**441,000,000**	10,000,000	12,05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154,350,000
		3층	1	126,360,000	326,640,000	-	**453,000,000**	10,000,000	12,65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158,550,000
		4층	1	127,760,000	330,240,000	-	**458,000,000**	10,000,000	12,9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160,300,000
		5층	1	129,150,000	333,850,000	-	**463,000,000**	10,000,000	13,15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162,050,000
		6층	1	130,550,000	337,450,000	-	**468,000,000**	10,000,000	13,4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46,800,000	163,800,000
		7층	1	131,380,000	339,620,000	-	**471,000,000**	10,000,000	13,55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164,850,000

			8층	1	132,220,000	341,780,000	-	**474,000,000**	10,000,000	13,7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165,900,000
			9층	1	133,060,000	343,940,000	-	**477,000,000**	10,000,000	13,85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66,950,000
			10층	1	133,900,000	346,100,000	-	**480,000,000**	10,000,000	14,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168,000,000
			11층	1	134,170,000	346,830,000	-	**481,000,000**	10,000,000	14,05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48,100,000	168,350,000
			12층	1	134,450,000	347,550,000	-	**482,000,000**	10,000,000	14,1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168,700,000
			13층	1	134,730,000	348,270,000	-	**483,000,000**	10,000,000	14,15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169,050,000
			14층	1	135,010,000	348,990,000	-	**484,000,000**	10,000,000	14,2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169,400,000
			15층	1	135,290,000	349,710,000	-	**485,000,000**	10,000,000	14,25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48,500,000	169,750,000
			16층	1	135,570,000	350,430,000	-	**486,000,000**	10,000,000	14,3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70,100,000
			17층	1	135,850,000	351,150,000	-	**487,000,000**	10,000,000	14,35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70,450,000
			18층	1	136,130,000	351,870,000	-	**488,000,000**	10,000,000	14,4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170,800,000
			19층	1	136,410,000	352,590,000	-	**489,000,000**	10,000,000	14,45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171,150,000
			20층	1	136,680,000	353,320,000	-	**490,000,000**	10,000,000	14,5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71,500,000
			21층	1	136,960,000	354,040,000	-	**491,000,000**	10,000,000	14,55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171,850,000
			22층	1	137,240,000	354,760,000	-	**492,000,000**	10,000,000	14,6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172,200,000
			23층	1	137,520,000	355,480,000	-	**493,000,000**	10,000,000	14,65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72,550,000
			24층	1	137,800,000	356,200,000	-	**494,000,000**	10,000,000	14,7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49,400,000	172,900,000
			25층	1	138,080,000	356,920,000	-	**495,000,000**	10,000,000	14,75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173,250,000
			26층	1	138,360,000	357,640,000	-	**496,000,000**	10,000,000	14,8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49,600,000	173,600,000
			27층	1	138,640,000	358,360,000	-	**497,000,000**	10,000,000	14,85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173,950,000
			28층	1	138,920,000	359,080,000	-	**498,000,000**	10,000,000	14,9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174,300,000
			29층	1	139,190,000	359,810,000	-	**499,000,000**	10,000,000	14,95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49,900,000	174,650,000
84C	271	101동 1호, 102동 1호	1층	2	128,600,000	332,400,000	-	**461,000,000**	10,000,000	13,05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161,350,000
			2층	2	134,730,000	348,270,000	-	**483,000,000**	10,000,000	14,15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48,300,000	169,050,000
			3층	2	138,080,000	356,920,000	-	**495,000,000**	10,000,000	14,75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49,500,000	173,250,000
			4층	2	139,470,000	360,530,000	-	**500,000,000**	10,000,000	15,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175,000,000
			5층	2	140,870,000	364,130,000	-	**505,000,000**	10,000,000	15,25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176,750,000
			6층	2	142,260,000	367,740,000	-	**510,000,000**	10,000,000	15,5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78,500,000
			7층	2	143,100,000	369,900,000	-	**513,000,000**	10,000,000	15,65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79,550,000
			8층	2	143,940,000	372,060,000	-	**516,000,000**	10,000,000	15,8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180,600,000
			9층	2	144,770,000	374,230,000	-	**519,000,000**	10,000,000	15,95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181,650,000
			10층	2	145,610,000	376,390,000	-	**522,000,000**	10,000,000	16,1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182,700,000
			11층	2	145,890,000	377,110,000	-	**523,000,000**	10,000,000	16,15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183,050,000
			12층	2	146,170,000	377,830,000	-	**524,000,000**	10,000,000	16,2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183,400,000
			13층	2	146,450,000	378,550,000	-	**525,000,000**	10,000,000	16,25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83,750,000
			14층	2	146,730,000	379,270,000	-	**526,000,000**	10,000,000	16,3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84,100,000
			15층	2	147,010,000	379,990,000	-	**527,000,000**	10,000,000	16,35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184,450,000
			16층	2	147,280,000	380,720,000	-	**528,000,000**	10,000,000	16,4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84,800,000
			17층	2	147,560,000	381,440,000	-	**529,000,000**	10,000,000	16,45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185,150,000
			18층	2	147,840,000	382,160,000	-	**530,000,000**	10,000,000	16,5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85,500,000
			19층	2	148,120,000	382,880,000	-	**531,000,000**	10,000,000	16,55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185,850,000
			20층	2	148,400,000	383,600,000	-	**532,000,000**	10,000,000	16,6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186,200,000
			21층	2	148,680,000	384,320,000	-	**533,000,000**	10,000,000	16,65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186,550,000
			22층	2	148,960,000	385,040,000	-	**534,000,000**	10,000,000	16,7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86,900,000
			23층	2	149,240,000	385,760,000	-	**535,000,000**	10,000,000	16,75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187,250,000
			24층	2	149,520,000	386,480,000	-	**536,000,000**	10,000,000	16,8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87,600,000
			25층	2	149,790,000	387,210,000	-	**537,000,000**	10,000,000	16,85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87,950,000
			26층	2	150,070,000	387,930,000	-	**538,000,000**	10,000,000	16,9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88,300,000
			27층	2	150,350,000	388,650,000	-	**539,000,000**	10,000,000	16,95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88,650,000
			28층	2	150,630,000	389,370,000	-	**540,000,000**	10,000,000	17,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89,000,000
			29층	2	150,910,000	390,090,000	-	**541,000,000**	10,000,000	17,05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189,350,000
		102동 4호	1층	1	132,780,000	343,220,000	-	**476,000,000**	10,000,000	13,8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166,600,000
			2층	1	138,920,000	359,080,000	-	**498,000,000**	10,000,000	14,9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174,300,000
			3층	1	142,260,000	367,740,000	-	**510,000,000**	10,000,000	15,5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78,500,000
			4층	1	143,660,000	371,340,000	-	**515,000,000**	10,000,000	15,75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80,250,000
			5층	1	145,050,000	374,950,000	-	**520,000,000**	10,000,000	16,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82,000,000
			6층	1	146,450,000	378,550,000	-	**525,000,000**	10,000,000	16,25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83,750,000
			7층	1	147,280,000	380,720,000	-	**528,000,000**	10,000,000	16,4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84,800,000
			8층	1	148,120,000	382,880,000	-	**531,000,000**	10,000,000	16,55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185,850,000

		9층	1	148,960,000	385,040,000	-	**534,000,000**	10,000,000	16,7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86,900,000
		10층	1	149,790,000	387,210,000	-	**537,000,000**	10,000,000	16,85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87,950,000
		11층	1	150,070,000	387,930,000	-	**538,000,000**	10,000,000	16,9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88,300,000
		12층	1	150,350,000	388,650,000	-	**539,000,000**	10,000,000	16,95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88,650,000
		13층	1	150,630,000	389,370,000	-	**540,000,000**	10,000,000	17,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89,000,000
		14층	1	150,910,000	390,090,000	-	**541,000,000**	10,000,000	17,05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189,350,000
		15층	1	151,190,000	390,810,000	-	**542,000,000**	10,000,000	17,1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89,700,000
		16층	1	151,470,000	391,530,000	-	**543,000,000**	10,000,000	17,15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190,050,000
		17층	1	151,750,000	392,250,000	-	**544,000,000**	10,000,000	17,2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190,400,000
		18층	1	152,030,000	392,970,000	-	**545,000,000**	10,000,000	17,25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190,750,000
		19층	1	152,300,000	393,700,000	-	**546,000,000**	10,000,000	17,3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191,100,000
		20층	1	152,580,000	394,420,000	-	**547,000,000**	10,000,000	17,35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191,450,000
		21층	1	152,860,000	395,140,000	-	**548,000,000**	10,000,000	17,4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191,800,000
		22층	1	153,140,000	395,860,000	-	**549,000,000**	10,000,000	17,45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192,150,000
		23층	1	153,420,000	396,580,000	-	**550,000,000**	10,000,000	17,5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92,500,000
		2층	1	136,960,000	354,040,000	-	**491,000,000**	10,000,000	14,55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171,850,000
		3층	1	139,750,000	361,250,000	-	**501,000,000**	10,000,000	15,05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175,350,000
		4층	1	140,590,000	363,410,000	-	**504,000,000**	10,000,000	15,2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176,400,000
		5층	1	141,430,000	365,570,000	-	**507,000,000**	10,000,000	15,35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177,450,000
		6층	1	142,260,000	367,740,000	-	**510,000,000**	10,000,000	15,5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78,500,000
		7층	1	143,100,000	369,900,000	-	**513,000,000**	10,000,000	15,65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79,550,000
		8층	1	143,940,000	372,060,000	-	**516,000,000**	10,000,000	15,8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180,600,000
		9층	1	144,770,000	374,230,000	-	**519,000,000**	10,000,000	15,95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181,650,000
		10층	1	145,610,000	376,390,000	-	**522,000,000**	10,000,000	16,1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182,700,000
		11층	1	145,890,000	377,110,000	-	**523,000,000**	10,000,000	16,15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183,050,000
		12층	1	146,170,000	377,830,000	-	**524,000,000**	10,000,000	16,2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183,400,000
		13층	1	146,450,000	378,550,000	-	**525,000,000**	10,000,000	16,25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83,750,000
	103동	14층	1	146,730,000	379,270,000	-	**526,000,000**	10,000,000	16,3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84,100,000
	1호	15층	1	147,010,000	379,990,000	-	**527,000,000**	10,000,000	16,35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184,450,000
		16층	1	147,280,000	380,720,000	-	**528,000,000**	10,000,000	16,4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84,800,000
		17층	1	147,560,000	381,440,000	-	**529,000,000**	10,000,000	16,45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185,150,000
		18층	1	147,840,000	382,160,000	-	**530,000,000**	10,000,000	16,5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85,500,000
		19층	1	148,120,000	382,880,000	-	**531,000,000**	10,000,000	16,55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185,850,000
		20층	1	148,400,000	383,600,000	-	**532,000,000**	10,000,000	16,6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186,200,000
		21층	1	148,680,000	384,320,000	-	**533,000,000**	10,000,000	16,65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186,550,000
		22층	1	148,960,000	385,040,000	-	**534,000,000**	10,000,000	16,7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86,900,000
		23층	1	149,240,000	385,760,000	-	**535,000,000**	10,000,000	16,75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187,250,000
		24층	1	149,520,000	386,480,000	-	**536,000,000**	10,000,000	16,8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87,600,000
		25층	1	149,790,000	387,210,000	-	**537,000,000**	10,000,000	16,85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87,950,000
		26층	1	150,070,000	387,930,000	-	**538,000,000**	10,000,000	16,9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88,300,000
		27층	1	150,350,000	388,650,000	-	**539,000,000**	10,000,000	16,95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88,650,000
		28층	1	150,630,000	389,370,000	-	**540,000,000**	10,000,000	17,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89,000,000
		2층	1	136,680,000	353,320,000	-	**490,000,000**	10,000,000	14,5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171,500,000
		3층	1	140,030,000	361,970,000	-	**502,000,000**	10,000,000	15,1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75,700,000
		4층	1	141,430,000	365,570,000	-	**507,000,000**	10,000,000	15,35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177,450,000
		5층	1	142,820,000	369,180,000	-	**512,000,000**	10,000,000	15,6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179,200,000
		6층	1	144,220,000	372,780,000	-	**517,000,000**	10,000,000	15,85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80,950,000
		7층	1	145,050,000	374,950,000	-	**520,000,000**	10,000,000	16,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82,000,000
		8층	1	145,890,000	377,110,000	-	**523,000,000**	10,000,000	16,15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183,050,000
		9층	1	146,730,000	379,270,000	-	**526,000,000**	10,000,000	16,3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84,100,000
	103동	10층	1	147,560,000	381,440,000	-	**529,000,000**	10,000,000	16,45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185,150,000
	5호	11층	1	147,840,000	382,160,000	-	**530,000,000**	10,000,000	16,5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85,500,000
		12층	1	148,120,000	382,880,000	-	**531,000,000**	10,000,000	16,55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185,850,000
		13층	1	148,400,000	383,600,000	-	**532,000,000**	10,000,000	16,6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186,200,000
		14층	1	148,680,000	384,320,000	-	**533,000,000**	10,000,000	16,65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186,550,000
		15층	1	148,960,000	385,040,000	-	**534,000,000**	10,000,000	16,7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86,900,000
		16층	1	149,240,000	385,760,000	-	**535,000,000**	10,000,000	16,75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187,250,000
		17층	1	149,520,000	386,480,000	-	**536,000,000**	10,000,000	16,8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87,600,000
		18층	1	149,790,000	387,210,000	-	**537,000,000**	10,000,000	16,85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87,950,000

		19층	1	150,070,000	387,930,000	-	**538,000,000**	10,000,000	16,9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88,300,000
		20층	1	150,350,000	388,650,000	-	**539,000,000**	10,000,000	16,95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88,650,000
		21층	1	150,630,000	389,370,000	-	**540,000,000**	10,000,000	17,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89,000,000
		22층	1	150,910,000	390,090,000	-	**541,000,000**	10,000,000	17,05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189,350,000
		23층	1	151,190,000	390,810,000	-	**542,000,000**	10,000,000	17,1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89,700,000
		24층	1	151,470,000	391,530,000	-	**543,000,000**	10,000,000	17,15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190,050,000
		25층	1	151,750,000	392,250,000	-	**544,000,000**	10,000,000	17,2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190,400,000
		26층	1	152,030,000	392,970,000	-	**545,000,000**	10,000,000	17,25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190,750,000
		27층	1	152,300,000	393,700,000	-	**546,000,000**	10,000,000	17,3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191,100,000
		28층	1	152,580,000	394,420,000	-	**547,000,000**	10,000,000	17,35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191,450,000
		29층	1	152,860,000	395,140,000	-	**548,000,000**	10,000,000	17,4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191,800,000
		2층	1	136,960,000	354,040,000	-	**491,000,000**	10,000,000	14,55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49,100,000	171,850,000
		3층	1	139,750,000	361,250,000	-	**501,000,000**	10,000,000	15,05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175,350,000
		4층	1	140,590,000	363,410,000	-	**504,000,000**	10,000,000	15,2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176,400,000
		5층	1	141,430,000	365,570,000	-	**507,000,000**	10,000,000	15,35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177,450,000
		6층	1	142,260,000	367,740,000	-	**510,000,000**	10,000,000	15,5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78,500,000
		7층	1	143,100,000	369,900,000	-	**513,000,000**	10,000,000	15,65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79,550,000
		8층	1	143,940,000	372,060,000	-	**516,000,000**	10,000,000	15,8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180,600,000
		9층	1	144,770,000	374,230,000	-	**519,000,000**	10,000,000	15,95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181,650,000
		10층	1	145,610,000	376,390,000	-	**522,000,000**	10,000,000	16,1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182,700,000
		11층	1	145,890,000	377,110,000	-	**523,000,000**	10,000,000	16,15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52,300,000	183,050,000
		12층	1	146,170,000	377,830,000	-	**524,000,000**	10,000,000	16,2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183,400,000
		13층	1	146,450,000	378,550,000	-	**525,000,000**	10,000,000	16,25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83,750,000
		14층	1	146,730,000	379,270,000	-	**526,000,000**	10,000,000	16,3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52,600,000	184,100,000
104동 2호		15층	1	147,010,000	379,990,000	-	**527,000,000**	10,000,000	16,35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184,450,000
		16층	1	147,280,000	380,720,000	-	**528,000,000**	10,000,000	16,4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84,800,000
		17층	1	147,560,000	381,440,000	-	**529,000,000**	10,000,000	16,45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185,150,000
		18층	1	147,840,000	382,160,000	-	**530,000,000**	10,000,000	16,5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85,500,000
		19층	1	148,120,000	382,880,000	-	**531,000,000**	10,000,000	16,55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185,850,000
		20층	1	148,400,000	383,600,000	-	**532,000,000**	10,000,000	16,6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53,200,000	186,200,000
		21층	1	148,680,000	384,320,000	-	**533,000,000**	10,000,000	16,65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186,550,000
		22층	1	148,960,000	385,040,000	-	**534,000,000**	10,000,000	16,7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86,900,000
		23층	1	149,240,000	385,760,000	-	**535,000,000**	10,000,000	16,75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187,250,000
		24층	1	149,520,000	386,480,000	-	**536,000,000**	10,000,000	16,8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87,600,000
		25층	1	149,790,000	387,210,000	-	**537,000,000**	10,000,000	16,85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87,950,000
		26층	1	150,070,000	387,930,000	-	**538,000,000**	10,000,000	16,9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88,300,000
		27층	1	150,350,000	388,650,000	-	**539,000,000**	10,000,000	16,95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88,650,000
		28층	1	150,630,000	389,370,000	-	**540,000,000**	10,000,000	17,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89,000,000
		29층	1	150,910,000	390,090,000	-	**541,000,000**	10,000,000	17,05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189,350,000
		1층	1	135,570,000	350,430,000	-	**486,000,000**	10,000,000	14,3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70,100,000
		2층	1	141,150,000	364,850,000	-	**506,000,000**	10,000,000	15,3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177,100,000
		3층	1	143,940,000	372,060,000	-	**516,000,000**	10,000,000	15,8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180,600,000
		4층	1	144,770,000	374,230,000	-	**519,000,000**	10,000,000	15,95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181,650,000
		5층	1	145,610,000	376,390,000	-	**522,000,000**	10,000,000	16,1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182,700,000
		6층	1	146,450,000	378,550,000	-	**525,000,000**	10,000,000	16,25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83,750,000
		7층	1	147,280,000	380,720,000	-	**528,000,000**	10,000,000	16,4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84,800,000
		8층	1	148,120,000	382,880,000	-	**531,000,000**	10,000,000	16,55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185,850,000
		9층	1	148,960,000	385,040,000	-	**534,000,000**	10,000,000	16,7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86,900,000
		10층	1	149,790,000	387,210,000	-	**537,000,000**	10,000,000	16,85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87,950,000
105동 1호		11층	1	150,070,000	387,930,000	-	**538,000,000**	10,000,000	16,9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88,300,000
		12층	1	150,350,000	388,650,000	-	**539,000,000**	10,000,000	16,95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88,650,000
		13층	1	150,630,000	389,370,000	-	**540,000,000**	10,000,000	17,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89,000,000
		14층	1	150,910,000	390,090,000	-	**541,000,000**	10,000,000	17,05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189,350,000
		15층	1	151,190,000	390,810,000	-	**542,000,000**	10,000,000	17,1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89,700,000
		16층	1	151,470,000	391,530,000	-	**543,000,000**	10,000,000	17,15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190,050,000
		17층	1	151,750,000	392,250,000	-	**544,000,000**	10,000,000	17,2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190,400,000
		18층	1	152,030,000	392,970,000	-	**545,000,000**	10,000,000	17,25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190,750,000
		19층	1	152,300,000	393,700,000	-	**546,000,000**	10,000,000	17,3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191,100,000

			20층	1	152,580,000	394,420,000	-	**547,000,000**	10,000,000	17,35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191,450,000
			21층	1	152,860,000	395,140,000	-	**548,000,000**	10,000,000	17,4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191,800,000
			22층	1	153,140,000	395,860,000	-	**549,000,000**	10,000,000	17,45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192,150,000
			23층	1	153,420,000	396,580,000	-	**550,000,000**	10,000,000	17,5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92,500,000
			24층	1	153,700,000	397,300,000	-	**551,000,000**	10,000,000	17,55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192,850,000
			25층	1	153,980,000	398,020,000	-	**552,000,000**	10,000,000	17,6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193,200,000
			26층	1	154,260,000	398,740,000	-	**553,000,000**	10,000,000	17,65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193,550,000
			27층	1	154,540,000	399,460,000	-	**554,000,000**	10,000,000	17,7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193,900,000
			28층	1	154,820,000	400,180,000	-	**555,000,000**	10,000,000	17,75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194,250,000
			29층	1	155,090,000	400,910,000	-	**556,000,000**	10,000,000	17,8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194,600,000
		106동 4호, 107동 4호	2층	2	138,920,000	359,080,000	-	**498,000,000**	10,000,000	14,9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174,300,000
			3층	2	142,260,000	367,740,000	-	**510,000,000**	10,000,000	15,5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78,500,000
			4층	2	143,660,000	371,340,000	-	**515,000,000**	10,000,000	15,75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80,250,000
			5층	2	145,050,000	374,950,000	-	**520,000,000**	10,000,000	16,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82,000,000
			6층	2	146,450,000	378,550,000	-	**525,000,000**	10,000,000	16,25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83,750,000
			7층	2	147,280,000	380,720,000	-	**528,000,000**	10,000,000	16,4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84,800,000
			8층	2	148,120,000	382,880,000	-	**531,000,000**	10,000,000	16,55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185,850,000
			9층	2	148,960,000	385,040,000	-	**534,000,000**	10,000,000	16,7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86,900,000
			10층	2	149,790,000	387,210,000	-	**537,000,000**	10,000,000	16,85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87,950,000
			11층	2	150,070,000	387,930,000	-	**538,000,000**	10,000,000	16,9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88,300,000
			12층	2	150,350,000	388,650,000	-	**539,000,000**	10,000,000	16,95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88,650,000
			13층	2	150,630,000	389,370,000	-	**540,000,000**	10,000,000	17,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89,000,000
			14층	2	150,910,000	390,090,000	-	**541,000,000**	10,000,000	17,05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189,350,000
			15층	2	151,190,000	390,810,000	-	**542,000,000**	10,000,000	17,1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89,700,000
			16층	2	151,470,000	391,530,000	-	**543,000,000**	10,000,000	17,15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190,050,000
			17층	2	151,750,000	392,250,000	-	**544,000,000**	10,000,000	17,2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190,400,000
			18층	2	152,030,000	392,970,000	-	**545,000,000**	10,000,000	17,25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190,750,000
			19층	2	152,300,000	393,700,000	-	**546,000,000**	10,000,000	17,3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191,100,000
			20층	2	152,580,000	394,420,000	-	**547,000,000**	10,000,000	17,35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191,450,000
			21층	2	152,860,000	395,140,000	-	**548,000,000**	10,000,000	17,4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191,800,000
			22층	2	153,140,000	395,860,000	-	**549,000,000**	10,000,000	17,45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192,150,000
			23층	2	153,420,000	396,580,000	-	**550,000,000**	10,000,000	17,5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92,500,000
			24층	2	153,700,000	397,300,000	-	**551,000,000**	10,000,000	17,55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192,850,000
			25층	2	153,980,000	398,020,000	-	**552,000,000**	10,000,000	17,6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193,200,000
			26층	2	154,260,000	398,740,000	-	**553,000,000**	10,000,000	17,65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193,550,000
		107동 1호	2층	1	141,150,000	364,850,000	-	**506,000,000**	10,000,000	15,3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50,600,000	177,100,000
			3층	1	143,940,000	372,060,000	-	**516,000,000**	10,000,000	15,8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51,600,000	180,600,000
			4층	1	144,770,000	374,230,000	-	**519,000,000**	10,000,000	15,95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181,650,000
			5층	1	145,610,000	376,390,000	-	**522,000,000**	10,000,000	16,1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52,200,000	182,700,000
			6층	1	146,450,000	378,550,000	-	**525,000,000**	10,000,000	16,25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83,750,000
			7층	1	147,280,000	380,720,000	-	**528,000,000**	10,000,000	16,4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52,800,000	184,800,000
			8층	1	148,120,000	382,880,000	-	**531,000,000**	10,000,000	16,55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185,850,000
			9층	1	148,960,000	385,040,000	-	**534,000,000**	10,000,000	16,7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86,900,000
			10층	1	149,790,000	387,210,000	-	**537,000,000**	10,000,000	16,85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87,950,000
			11층	1	150,070,000	387,930,000	-	**538,000,000**	10,000,000	16,9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88,300,000
			12층	1	150,350,000	388,650,000	-	**539,000,000**	10,000,000	16,95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88,650,000
			13층	1	150,630,000	389,370,000	-	**540,000,000**	10,000,000	17,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89,000,000
			14층	1	150,910,000	390,090,000	-	**541,000,000**	10,000,000	17,05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189,350,000
			15층	1	151,190,000	390,810,000	-	**542,000,000**	10,000,000	17,1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89,700,000
			16층	1	151,470,000	391,530,000	-	**543,000,000**	10,000,000	17,15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54,300,000	190,050,000
			17층	1	151,750,000	392,250,000	-	**544,000,000**	10,000,000	17,2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190,400,000
			18층	1	152,030,000	392,970,000	-	**545,000,000**	10,000,000	17,25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190,750,000
			19층	1	152,300,000	393,700,000	-	**546,000,000**	10,000,000	17,3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191,100,000
			20층	1	152,580,000	394,420,000	-	**547,000,000**	10,000,000	17,35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54,700,000	191,450,000
			21층	1	152,860,000	395,140,000	-	**548,000,000**	10,000,000	17,4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191,800,000
			22층	1	153,140,000	395,860,000	-	**549,000,000**	10,000,000	17,45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192,150,000
			23층	1	153,420,000	396,580,000	-	**550,000,000**	10,000,000	17,5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55,000,000	192,500,000
			24층	1	153,700,000	397,300,000	-	**551,000,000**	10,000,000	17,55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192,850,000

			25층	1	153,980,000	398,020,000	-	**552,000,000**	10,000,000	17,6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193,200,000
			26층	1	154,260,000	398,740,000	-	**553,000,000**	10,000,000	17,65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193,550,000
			27층	1	154,540,000	399,460,000	-	**554,000,000**	10,000,000	17,7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193,900,000
			28층	1	154,820,000	400,180,000	-	**555,000,000**	10,000,000	17,75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194,250,000
			29층	1	155,090,000	400,910,000	-	**556,000,000**	10,000,000	17,8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194,600,000
84D	23	105동 3호	2층	1	140,030,000	361,970,000	-	**502,000,000**	10,000,000	15,1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50,200,000	175,700,000
			3층	1	142,820,000	369,180,000	-	**512,000,000**	10,000,000	15,6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51,200,000	179,200,000
			4층	1	143,660,000	371,340,000	-	**515,000,000**	10,000,000	15,75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80,250,000
			5층	1	144,490,000	373,510,000	-	**518,000,000**	10,000,000	15,9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81,300,000
			6층	1	145,330,000	375,670,000	-	**521,000,000**	10,000,000	16,05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182,350,000
			7층	1	146,170,000	377,830,000	-	**524,000,000**	10,000,000	16,2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183,400,000
			8층	1	147,010,000	379,990,000	-	**527,000,000**	10,000,000	16,35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52,700,000	184,450,000
			9층	1	147,840,000	382,160,000	-	**530,000,000**	10,000,000	16,5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53,000,000	185,500,000
			10층	1	148,680,000	384,320,000	-	**533,000,000**	10,000,000	16,65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186,550,000
			11층	1	148,960,000	385,040,000	-	**534,000,000**	10,000,000	16,7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86,900,000
			12층	1	149,240,000	385,760,000	-	**535,000,000**	10,000,000	16,75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187,250,000
			13층	1	149,520,000	386,480,000	-	**536,000,000**	10,000,000	16,8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87,600,000
			14층	1	149,790,000	387,210,000	-	**537,000,000**	10,000,000	16,85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87,950,000
			15층	1	150,070,000	387,930,000	-	**538,000,000**	10,000,000	16,9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88,300,000
			16층	1	150,350,000	388,650,000	-	**539,000,000**	10,000,000	16,95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88,650,000
			17층	1	150,630,000	389,370,000	-	**540,000,000**	10,000,000	17,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89,000,000
			18층	1	150,910,000	390,090,000	-	**541,000,000**	10,000,000	17,05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189,350,000
			19층	1	153,980,000	398,020,000	-	**552,000,000**	10,000,000	17,6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55,200,000	193,200,000
			20층	1	154,260,000	398,740,000	-	**553,000,000**	10,000,000	17,65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193,550,000
			21층	1	154,540,000	399,460,000	-	**554,000,000**	10,000,000	17,7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193,900,000
			22층	1	154,820,000	400,180,000	-	**555,000,000**	10,000,000	17,75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194,250,000
			23층	1	155,090,000	400,910,000	-	**556,000,000**	10,000,000	17,8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194,600,000
			24층	1	155,370,000	401,630,000	-	**557,000,000**	10,000,000	17,85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55,700,000	194,950,000
113	57	104동 1호	1층	1	171,458,000	443,220,000	44,322,000	**659,000,000**	10,000,000	22,950,000	65,900,000	65,900,000	65,900,000	65,900,000	65,900,000	65,900,000	230,650,000
			2층	1	176,926,000	457,340,000	45,734,000	**680,000,000**	10,000,000	24,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238,000,000
			3층	1	179,786,000	464,740,000	46,474,000	**691,000,000**	10,000,000	24,55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241,850,000
			4층	1	180,564,000	466,760,000	46,676,000	**694,000,000**	10,000,000	24,7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242,900,000
			5층	1	181,353,000	468,770,000	46,877,000	**697,000,000**	10,000,000	24,85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243,950,000
			6층	1	182,394,000	471,460,000	47,146,000	**701,000,000**	10,000,000	25,05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245,350,000
			7층	1	183,172,000	473,480,000	47,348,000	**704,000,000**	10,000,000	25,2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246,400,000
			8층	1	183,950,000	475,500,000	47,550,000	**707,000,000**	10,000,000	25,35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247,450,000
			9층	1	184,728,000	477,520,000	47,752,000	**710,000,000**	10,000,000	25,5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71,000,000	248,500,000
			10층	1	185,769,000	480,210,000	48,021,000	**714,000,000**	10,000,000	25,7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71,400,000	249,900,000
			11층	1	186,032,000	480,880,000	48,088,000	**715,000,000**	10,000,000	25,750,000	71,500,000	71,500,000	71,500,000	71,500,000	71,500,000	71,500,000	250,250,000
			12층	1	186,295,000	481,550,000	48,155,000	**716,000,000**	10,000,000	25,800,000	71,600,000	71,600,000	71,600,000	71,600,000	71,600,000	71,600,000	250,600,000
			13층	1	186,558,000	482,220,000	48,222,000	**717,000,000**	10,000,000	25,850,000	71,700,000	71,700,000	71,700,000	71,700,000	71,700,000	71,700,000	250,950,000
			14층	1	186,810,000	482,900,000	48,290,000	**718,000,000**	10,000,000	25,900,000	71,800,000	71,800,000	71,800,000	71,800,000	71,800,000	71,800,000	251,300,000
			15층	1	187,073,000	483,570,000	48,357,000	**719,000,000**	10,000,000	25,95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251,650,000
			16층	1	187,336,000	484,240,000	48,424,000	**720,000,000**	10,000,000	26,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252,000,000
			17층	1	187,588,000	484,920,000	48,492,000	**721,000,000**	10,000,000	26,05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252,350,000
			18층	1	187,851,000	485,590,000	48,559,000	**722,000,000**	10,000,000	26,1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72,200,000	252,700,000
			19층	1	188,114,000	486,260,000	48,626,000	**723,000,000**	10,000,000	26,15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72,300,000	253,050,000
			20층	1	188,377,000	486,930,000	48,693,000	**724,000,000**	10,000,000	26,2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253,400,000
			21층	1	188,629,000	487,610,000	48,761,000	**725,000,000**	10,000,000	26,25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72,500,000	253,750,000
			22층	1	188,892,000	488,280,000	48,828,000	**726,000,000**	10,000,000	26,3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254,100,000
			23층	1	189,155,000	488,950,000	48,895,000	**727,000,000**	10,000,000	26,35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254,450,000
			24층	1	189,670,000	490,300,000	49,030,000	**729,000,000**	10,000,000	26,45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72,900,000	255,150,000
			25층	1	189,933,000	490,970,000	49,097,000	**730,000,000**	10,000,000	26,5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255,500,000
			26층	1	190,196,000	491,640,000	49,164,000	**731,000,000**	10,000,000	26,55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255,850,000
			27층	1	190,459,000	492,310,000	49,231,000	**732,000,000**	10,000,000	26,6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256,200,000
			28층	1	190,711,000	492,990,000	49,299,000	**733,000,000**	10,000,000	26,65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73,300,000	256,550,000
			29층	1	190,974,000	493,660,000	49,366,000	**734,000,000**	10,000,000	26,7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256,900,000
		106동 1호	2층	1	183,950,000	475,500,000	47,550,000	**707,000,000**	10,000,000	25,35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70,700,000	247,450,000
			3층	1	186,810,000	482,900,000	48,290,000	**718,000,000**	10,000,000	25,900,000	71,800,000	71,800,000	71,800,000	71,800,000	71,800,000	71,800,000	251,300,000

		4층	1	187,588,000	484,920,000	48,492,000	**721,000,000**	10,000,000	26,05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252,350,000
		5층	1	188,377,000	486,930,000	48,693,000	**724,000,000**	10,000,000	26,2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72,400,000	253,400,000
		6층	1	189,155,000	488,950,000	48,895,000	**727,000,000**	10,000,000	26,35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72,700,000	254,450,000
		7층	1	190,196,000	491,640,000	49,164,000	**731,000,000**	10,000,000	26,55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255,850,000
		8층	1	190,974,000	493,660,000	49,366,000	**734,000,000**	10,000,000	26,7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256,900,000
		9층	1	191,752,000	495,680,000	49,568,000	**737,000,000**	10,000,000	26,85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257,950,000
		10층	1	192,541,000	497,690,000	49,769,000	**740,000,000**	10,000,000	27,000,000	74,000,000	74,000,000	74,000,000	74,000,000	74,000,000	74,000,000	259,000,000
		11층	1	192,793,000	498,370,000	49,837,000	**741,000,000**	10,000,000	27,05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259,350,000
		12층	1	193,056,000	499,040,000	49,904,000	**742,000,000**	10,000,000	27,1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74,200,000	259,700,000
		13층	1	193,582,000	500,380,000	50,038,000	**744,000,000**	10,000,000	27,200,000	74,400,000	74,400,000	74,400,000	74,400,000	74,400,000	74,400,000	260,400,000
		14층	1	193,834,000	501,060,000	50,106,000	**745,000,000**	10,000,000	27,25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260,750,000
		15층	1	194,097,000	501,730,000	50,173,000	**746,000,000**	10,000,000	27,3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261,100,000
		16층	1	194,360,000	502,400,000	50,240,000	**747,000,000**	10,000,000	27,35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261,450,000
		17층	1	194,623,000	503,070,000	50,307,000	**748,000,000**	10,000,000	27,4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74,800,000	261,800,000
		18층	1	194,875,000	503,750,000	50,375,000	**749,000,000**	10,000,000	27,45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262,150,000
		19층	1	195,138,000	504,420,000	50,442,000	**750,000,000**	10,000,000	27,5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262,500,000
		20층	1	195,401,000	505,090,000	50,509,000	**751,000,000**	10,000,000	27,55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262,850,000
		21층	1	195,664,000	505,760,000	50,576,000	**752,000,000**	10,000,000	27,6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75,200,000	263,200,000
		22층	1	195,916,000	506,440,000	50,644,000	**753,000,000**	10,000,000	27,65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263,550,000
		23층	1	196,179,000	507,110,000	50,711,000	**754,000,000**	10,000,000	27,7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263,900,000
		24층	1	196,442,000	507,780,000	50,778,000	**755,000,000**	10,000,000	27,750,000	75,500,000	75,500,000	75,500,000	75,500,000	75,500,000	75,500,000	264,250,000
		25층	1	196,705,000	508,450,000	50,845,000	**756,000,000**	10,000,000	27,8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264,600,000
		26층	1	196,957,000	509,130,000	50,913,000	**757,000,000**	10,000,000	27,85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264,950,000
		27층	1	197,483,000	510,470,000	51,047,000	**759,000,000**	10,000,000	27,95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265,650,000
		28층	1	197,735,000	511,150,000	51,115,000	**760,000,000**	10,000,000	28,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266,000,000
		29층	1	197,998,000	511,820,000	51,182,000	**761,000,000**	10,000,000	28,05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266,350,000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분양금액은 사업주체 자체기준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 확장비용과 추가 선택 품목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펌프실, 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 및 지하 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별 대지지분은 각 시설별 계약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고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구분 없이 대지를 공유하며, 아파트(공동주택)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공동주택)의 대지지분을 계약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 버림에 대한 오차는 타입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근린생활시설로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였으며, 실별 안목치수는 발코니 확장 시 기본 및 유상옵션 마감재 시공 전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는 계약금 5%(1차 및 2차) 완납 후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

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분양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분양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잔여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2차 계약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 선납금액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분양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공동주택)이며, 분양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비 금액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조경식재, 조경녹지선형 등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원본서류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실시계획인가 미완료 시 또는 준공 전 인허가청 요구사항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도시계획도로, 방음벽, 도시개발사업 내 필지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근에 비선호시설이 위치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사전방문 등을 통해 확인 후 계약 체결을 해야 하며, 추후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주동 및 부대시설의 형태, 옥상 옥탑부, 창호 형태, 측벽 디자인, 외부 색채, 외벽 로고 사인, 외벽 마감, 각종 시설물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법규 현황,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른 시공성 개선, 상품 품질 및 디자인 개선, 시공사의 디자인 매뉴얼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

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td></tr>
</table>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영주시, 경상북도 거주자)	그 밖의 광역시 (대구광역시 거주자)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부 경북북부보훈지청 보상팀 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부 경북북부보훈지청 보상팀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영주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경상북도청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대구광역시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영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자)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시·도(경상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106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
(2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
<tr><td>3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3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영주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table>
<tr><th>순위</th><th>내용</th></tr>
<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
<tr><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
</tabl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영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자)</td></tr>
<tr><td>비고</td><td>■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td></tr>
</table>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2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3">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영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50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본 주택은 60㎡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
<tr><td>1단계</td><td>우선공급
(50%)</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일반공급
(20%)</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 rowspan="2">3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영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자)
</td></tr>
</table>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2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6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의3)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 (5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일반공급 (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영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11.2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160% 초과하나,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부동산가액 충족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주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영주시, 경상북도 거주자)</th><th>그 밖의 광역시
(대구광역시)</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00만원</td><td>25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300만원</td><td>400만원</td><td>6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400만원</td><td>700만원</td><td>1,0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500만원</td><td>1,000만원</td><td>1,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영주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tr><th>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
<tr><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td>40%</td><td>60%</td></tr>
<tr><td>전용면적 85㎡ 초과</td><td>-</td><td>100%</td></tr>
</table>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
<table>
<tr><th>가점항목</th><th>가점상한</th><th>가점구분</th><th>점수</th><th>가점구분</th><th>점수</th></tr>
<tr><td rowspan="2">①무주택기간</td><td rowspan="2">32</td><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td>0</td><td>8년 이상 ~ 9년 미만</td><td>18</td></tr>
<tr><td>1년 미만</td><td>2</td><td>9년 이상 ~ 10년 미만</td><td>20</td></tr>
</table></td></tr>
</table>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1)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로서 같이 거주하는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로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로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입기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및 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26.12.02.(수)**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트리븐 가흥 견본주택(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765, 766
일반공급	**1순위**	**26.12.03.(목)**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정보취약계층에 한함)
	2순위	**26.12.04.(금)**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2.10.(목) ~ 2026.12.19.(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12.10.(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서류 제출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당첨자 및 자격확인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비고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2026.12.12.(토) ~ 2026.12.18.(금) 견본주택 방문 접수 (10:00 ~ 16:00)	트리븐 가흥 견본주택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765, 766)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일정,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홈페이지(https://www.trivn-doosan-gaheung.com/)에 안내 예정이며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는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호수 배정 추첨참여 및 계약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2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년 동안 보관 후 지체 없이 파기처리 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청약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자격검증이 불가할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구분 : 본인발급용(본인 직접 발급), 발급용도 : 아파트 계약용, 제출처 : 트리븐 가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제출불가
	O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O		주민등록표등본 (전체발급)	본인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발급)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본인과의 관계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 확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분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O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본인	• 특별공급 청약시 견본주택 현장방문 접수의 경우 제출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인터넷 청약신청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
		O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10년 이상) 명시]
		O	주민등록표등본 (전체발급)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분리세대)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청약신청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 배우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제출 (주택소유여부 확인) ※ 특별공급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청약이 불가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 전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함.(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 불가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O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사기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대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자		O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중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출산특례에 해당하여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 제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견본주택에 비치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의 경우 : 파견 및 출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의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서류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는 인정 안됨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중인 기간 중 세대원이 해외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발급)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기관추천	-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추천명부로 확인)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인터넷 청약시 생략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성평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함 *임신확인서 인정 불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출산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전부' 표시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3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제출
	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 *아래표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제출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견본주택 비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O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로 청약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 | 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필수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O	자산입증서류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아래표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자산입증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없이 제출하여야 함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함 *임신확인서 인정 불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출산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전부' 표시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발급)	배우자	•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발급)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일반공급으로 신청한 해당 자녀(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 입양인 경우 해당 자녀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발급)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노부모)과 추가 부양가족을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해당 피부양인 전원 제출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일로 설정)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노부모)과 추가 부양가족을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해당 피부양인 전원 제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O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제11조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명,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등 기재)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발급)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O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제11조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명,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등 기재)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생애최초 특별공급	O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청약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아래표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 인 세대원 전원 필수 제출
	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 *아래표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제출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견본주택 비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O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로 청약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 | 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필수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O	자산입증서류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아래표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자산입증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없이 제출하여야 함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함 *임신확인서 인정 불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출산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전부' 표시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발급)	배우자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입양인 경우, 해당 자녀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청약자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발급)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신생아 특별공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직계비속	• 신생아 특별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 중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관련 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함 *임신확인서 인정 불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출산이행 확인각서(양식) 견본주택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경우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제출
	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 *아래표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필수 제출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견본주택 비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O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로 청약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 | 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필수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추가 제출
		O	자산입증서류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 *아래표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자산입증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없이 제출하여야 함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발급)	배우자	•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발급)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대리인	O		위임장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트리븐 가흥 견본주택 비치
	O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발급구분 : 본인발급용(본인 직접 발급), 발급용도 : 아파트 당첨자격 확인 서류제출 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온라인 발급분) 제출 불가
	O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든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될 수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 수령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제출 (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해당직장 ②세무서,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재직증명서 ②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재직증명서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인날인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재직증명서 ②소득금액증명 ※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①, ②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①, ②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 미가입자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②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①국민연금공단 ②세무서
	법인사업자(대표자)	①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전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①, ②, ⑤해당직장 ③세무서

		③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④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재직증명서 ※ 계속적인 법인대표자의 경우, ①과 ②를 모두 제출하여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④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세무서 ②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②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필수)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해당직장, 세무서 ②해당직장
무직자		①비사업자 확인각서 ②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필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견본주택 비치 ②세무서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에 한함)		①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거주지 관할지역 고용센터 ②해당직장

※ 상기 소득증빙서류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자 전원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소득증빙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증빙서류는 직인날인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가 정확히 표시되어야 인정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소유증빙)**	①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③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①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위택스(www.wetax.go.kr) ③행정복지센터
	필수(자산가액 증빙)	①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 주택인 경우 :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②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③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서울시 : 서울시 이택스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kras.go.kr) ③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시가 확인을 위하여 "재산세 과세내역"을 발급받아 건물시가를 확인가능	
	해당자	「농지법」및 「초지법」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된 경우 ①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②축산업 허가증, 축산업 사업장 토지이용계획 : 「초지법」에 따른 초지인 경우 ③종중소유토지 증빙 또는 현장사진 및 해당 토지이용계획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①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②지자체 축산과 ③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발급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미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 발급방법 :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미과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①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위택스(www.wetax.go.kr)

※ 상기 자산입증서류는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영유아 및 미성년자 포함)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산가액(부동산가액) 산정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합산 산정해야 하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출산특례(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주택의 처분 조건)를 사용한 경우 해당주택 가액은 합산하지 않고 산정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청약신청자 본인)

구분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입증 기본서류	**근로자**	①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③해당직장 및 세무서 ②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 연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①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납부사실증명(납부내역 증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결정세역 환급 및 "0"원일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의 결정세액과 납부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을 비교하여 소득세 완납 확인 ③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간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①, ②세무서 ③, ④해당직장

	분)	④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상기 소득세 납부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통상 5년의 납부실적)이며,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소득증빙서류는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재직직장)에게서 발급받은 원본(직인날인 필수)만 제출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견본주택에 비치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구분 : 본인발급용(본인 직접 발급), 발급용도 : 아파트 계약용, 제출처 : 트리븐 가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제출불가
	O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O		주민등록표등본 (전체발급)	본인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발급)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본인과의 관계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 확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분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O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10년 이상) 명시]
		O	주민등록표등본 (전체발급)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분리세대)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청약신청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 배우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제출 (주택소유여부 확인) ※ 특별공급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청약이 불가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 전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함(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 불가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일반공급		O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O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발급)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일로 설정)
(가점제)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O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제11조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명,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등 기재)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발급)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전부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비속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O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제11조에 따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명,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등 기재)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의 경우 : 파견 및 출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의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서류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는 인정 안됨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중인 기간 중 세대원이 해외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대리인	O		위임장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트리븐 가흥 견본주택 비치
	O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발급구분 : 본인발급용(본인 직접 발급), 발급용도 : 아파트 당첨자격 확인 서류제출 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온라인 발급분) 제출 불가
	O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일정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6.12.21.(월) ~ 2026.12.23.(수) 10:00 ~ 16:00	트리븐 가흥 견본주택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765, 766)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금액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공급금액	농협은행	317-0031-0585-51	한국자산신탁(주)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개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개인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알릴 예정입니다.
- 분양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를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 수납 불가) ※ 공급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공급금액 납부계좌는 플러스 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이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공급금액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매도인(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정당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공급금액 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O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구분 : 본인발급용(본인 직접 발급), 발급용도 : 아파트 계약용, 제출처 : 트리븐 가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제출불가
	O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O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O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유상옵션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 작성
	O		전자수입인지	본인	• 해당 세대의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 ※ 수입인지 세액(총액) : 15만원(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분양계약자 부담분(수입인지 기준세액의 1/2) ※ 세부사항 : 트리븐 가흥 홈페이지 참고
대리인 계약시	O		위임장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트리븐 가흥 견본주택 비치
	O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발급구분 : 본인발급용(본인 직접 발급), 발급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온라인 발급분) 제출 불가
	O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예시 : 아파트 계약용, 아파트 계약 위임용 등)

■ 인지세 납부 안내

구분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총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아파트 공급계약서(추가선택품목 계약서 포함)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또는 시공사)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각각 50%)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공급금액+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유의사항

-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되며,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부정 당첨자로 관리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영주시,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가 본 아파트에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등은 최종 건축허가(변경포함)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니트 및 단지내 모형 및 홍보물 일체(POP, 이미지 외)는 분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공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 상의 조감도 및 이미지는 분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에서 일괄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 알선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 사항이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 · 대출 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무이자" 조건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선납할인 또는 무이자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주택형별로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시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 여부는 계약자의 대출 적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알선이 제공되지 않거나, 알선이 제공될 경우라도 계약자의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본 아파트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알선한 금융기관이 2곳 이상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금리는 동일한 기준금리+가산금리의 금융권을 알선할 예정이나 은행별 금리적용 기준 차이로 총 발생이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리 등 대출조건은 대출 실행 시점의 금융시장 상황, 금융기관의 조달금리 및 내부 여신정책, 사업장별 사업조건, 대출 규모, 보증기관의 보증조건, 대출 실행 시기, 대출 취급 구조 및 계약자별 신용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비슷한 시기에 중도금 대출을 취급한 인근 사업장과 대출조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리 등 대출조건을 제안 받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중도금 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선정하며,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금**

리 차이, 대출조건 차이 또는 금융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 내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 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대출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관은 사업주체가 선정합니다.
-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 대출보증 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신용 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시 중도금무이자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금액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대출 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시에는 중도금대출이 불가합니다.
- 대출 약정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일 납입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부담(납부)하며(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대출 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주체의 중도금 무이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대출 이자는 별도의 약정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공급금액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 기관, 조건 등)이 변경 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 대출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 해야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초과, 주택도시보증 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 공사)의 각 종 대출보증서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등에 의해 제한 되고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금액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 됩니다.)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 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 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 사유에 인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 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시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 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접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당첨 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각 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당첨 및 부적격 당첨자의 계약시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부적격자는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9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17,000,000	1,700,000	15,300,000
84B	17,000,000	1,700,000	15,300,000
84C	17,000,000	1,700,000	15,300,000
84D	17,000,000	1,700,000	15,300,000
113	22,000,000	2,200,000	19,8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개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개인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알릴 예정입니다.
- 지정된 발코니 확장 공사비(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예시 – 101동 1902호 계약자 → '1011902홍길동' / 103동 803호 계약자 → '1030803홍길동')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농협은행**	**301-0393-4952-21**	**한국자산신탁(주)**

■ 발코니 확장시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계약하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로 발코니 확장 또는 미확장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시 진행할 예정이며,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평면구성 및 제공품목이 변경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고 실별, 위치별로 선택시공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련세금(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또는 유상옵션 시 제공되는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확장위치 및 마감재 등 세부사항은 분양홍보물 또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상부 세대가 비확장형인 경우 커튼박스의 깊이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깊이가 축소됩니다.)
- 단위세대 빌트인가전 및 일부 마감재가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품목, 유상옵션 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유상옵션 품목(설치사항, 규격), 견본주택의 연출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가전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책상, 식탁, 전시조명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의류관리기, 세탁기, TV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승인 시 제출하는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기본 마감재 이외에 유상옵션 품목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이므로 제공품목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발코니 확장부위 창호 기본 사양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외부 창호	비고
발코니 비확장형	**침실/거실/주방/드레스룸**	22mm 일면로이복층유리 PVC 이중창	로이유리 해당 부위는 현장여건 및 성능 등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	
확장형	**침실1(안방)**	26mm 일면로이아르곤복층유리 PVC 단창	
	침실/거실/주방/드레스룸/다용도실	22mm 일면로이복층유리 PVC 이중창	
	발코니(안방)	22mm 일면로이복층유리 PVC 단창	

-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발코니 외부샤시는 타입, 창호 위치에 따라 규격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및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발코니에는 전용면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하향식피난구 또는 피난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발코니 창호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결로 등의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 및 수전은 시공하지 않고, 배수구 위치 및 배수/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벽·천장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벽체·천장 마감재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창호 주변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해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 타입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정고가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추가 선택 품목 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일정

※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 계약금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 품목(유상옵션) 대금	하나은행	172-910015-48104	두산에너빌리티(주)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
계약시	2028.11.30.	입주지정기간

※ 지정된 추가 선택 품목(유상옵션)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상기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 품목(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

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902호 계약자 → '1011902홍길동' / 103동 803호 계약자 → '1030803홍길동')

※ 추가 선택 품목 계약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와 체결하는 것으로 시행수탁자와 무관합니다.

■ 추가 선택 품목(유상 및 무상 선택옵션)

※ 모든 추가 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 추가선택 품목은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세부사항(계약일정 등)은 추후 견본주택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발코니 확장시 선택 가능)

가) 시스템 에어컨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 표기	옵션 선택	실내기	에어컨 설치 적용실(실내기)	판매가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	제조업체명
					계약시	28.11.30.	입주지정일	
84A	선택1	2	거실+침실1(안방)	4,050,000	405,000	1,620,000	2,025,000	삼성전자(주)
	선택2	4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8,380,000	838,000	3,352,000	4,190,000	
	선택3	5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알파룸	10,290,000	1,029,000	4,116,000	5,145,000	
84B	선택1	2	거실+침실1(안방)	4,100,000	410,000	1,640,000	2,050,000	
	선택2	4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8,410,000	841,000	3,364,000	4,205,000	
84C	선택1	2	거실+침실1(안방)	4,080,000	408,000	1,632,000	2,040,000	
	선택2	4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8,480,000	848,000	3,392,000	4,240,000	
	선택3	5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알파룸	10,390,000	1,039,000	4,156,000	5,195,000	
84D	선택1	2	거실+침실1(안방)	4,060,000	406,000	1,624,000	2,030,000	
	선택2	4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8,380,000	838,000	3,352,000	4,190,000	
	선택3	5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알파룸	10,310,000	1,031,000	4,124,000	5,155,000	
113	선택1	3	거실+주방/식당+침실1(안방)	6,720,000	672,000	2,688,000	3,360,000	
	선택2	6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침실4	12,430,000	1,243,000	4,972,000	6,215,000	

나) 시스템 에어컨 유의사항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단종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 시스템 에어컨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냉매 매립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되며, 시스템 에어컨 계약 이후 선택 취소 시, 기본제공 품목인 냉매 매립배관의 시공은 불가하오니 양지 바랍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냉매배관(거실 및 안방)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과 달리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의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디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에어컨 냉매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 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옵션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으며, 모델도 상이합니다.

2. 추가 선택 품목(발코니 확장시 선택 가능)

가) 인테리어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미선택 시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기본마감)	플러스옵션	약식표기별 판매가				
					84A	84B	84C	84D	113
개별 옵션	거실, 주방/식당, 복도 바닥 마감	무상선택1(기본형)	강마루	타일 강마루	1,350,000	1,350,000	1,460,000	1,500,000	1,810,000
		무상선택2·3 [현관/팬트리(통합형 or 분리형) + 알파룸(소)_식당 장식장 선택 시 포함] (84타입 제외)			1,490,000	-	1,580,000	1,610,000	-
		거실/알파룸 유리월 선택 시 (113타입 해당)			-	-	-	-	2,450,000
	현관	중문	-	3연동 유리슬라이딩	1,720,000	1,720,000	1,720,000	1,720,000	1,780,000
	침실1	파우더룸 슬라이딩도어 + 드레스룸 오픈	드레스룸 오픈 + 드레스룸 양개유리 도어	AL. Frame + 패턴유리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50,000
	욕실(2개소)	일체형 비데	공용 : 투피스/부부 : 원피스 타입	일체형 비데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1,250,000
	식당	홈바 장식장 (84B타입 제외)	-	유리 상부장 + PET마감 하부장 + 벽/상판 : 세라믹박판패널 (113타입은 유리 도어 키큰장 포함)	3,860,000	-	3,920,000	3,220,000	4,670,000
	침실3	붙박이장	-	PET마감 여닫이 도어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알파룸(소) 팬트리 선택 시 [무상선택2·3]	시스템 선반 (84B/113타입 제외)	-	포스트+선반	800,000	-	860,000	-	-
	거실/침실 유리월[113타입]		경량벽체+벽지+목여닫이문	AL Frame+유리월+슬라이딩문	-	-	-	-	5,180,000
마감 특화1	거실	아트월 1면	중국산 포세린 타일(600*1200)	세라믹박판패널(중국산)	3,620,000	4,140,000	3,540,000	3,580,000	4,510,000
	거실/복도 [무상선택1(84A·C·D), 기본형(84B/113)]	벽패널	벽지 + 일반 몰딩	PET or 시트 표면재 + PET 패널 위 픽처레일 몰딩					

마감 특화2	거실	아트월 1면	중국산 포세린 타일(600*1200)	세라믹박판패널(중국산)	3,590,000	-	3,600,000	3,530,000	-
	거실/복도 [무상선택2·3(84A·C·D)]	벽패널	벽지	PET or 시트 표면재 + PET 패널 위 픽처레일 몰딩					
마감 특화3	거실	아트월 1면	포세린 타일(600*1200_중국산)	세라믹박판패널(중국산)	3,280,000	-	3,200,000	3,270,000	3,500,000
	거실/복도 [홈바 장식장 선택 시 (84B타입 제외)]	벽패널	벽지	PET or 시트 표면재 + PET 패널 위 픽처레일 몰딩					
마감 특화4	거실	아트월 1면	포세린 타일(600*1200_중국산)	세라믹박판패널(중국산)	-	-	-	-	4,500,000
	거실/복도 [113타입 유리월 선택 시]	벽패널	벽지	시트패널(픽처레일 몰딩 없음)					
수납 특화	드레스룸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	일반 포스트+선반	고급형 벽패널+선반	4,390,000	4,790,000	5,070,000	4,680,000	7,200,000
	다용도실	수납가구	2단 세탁선반(소폭_콘센트 없음)	가구 위 MMA 상판(콘센트 포함)					
		시스템 선반[113타입]	-	일반 포스트+선반	-	-	-	-	
조명 특화 1-1	거실	우물천장	천장지+일반 직부등 (84타입 : 거실 1개소만 적용)	라인보드+리니어 조명 (거실 : 디밍 적용)	4,050,000	4,820,000	4,440,000	4,290,000	5,820,000
		아트월 간접조명	-	2개소 적용 [113타입 : 거실 유리월 미선택 시, 간접등 2개소 적용]					
	식당 [84A·C·D 타입 무상선택1 기준]	우물천장	평천장(113타입은 적용)+직부등	우물천장+라인보드+리니어 조명					
	주방	디자인 조명	일반 사각 매입등	디자인조명(매입형)					
조명 특화 1-2	거실	우물천장	천장지+일반 직부등	라인보드+리니어 조명 (거실 : 디밍 적용)	4,230,000		4,600,000	4,450,000	6,040,000
		아트월 간접조명	-	2개소 적용 [113타입 : 거실 유리월 선택 시, 다운라이트 2개소 적용]					
	식당 [84A·C·D 타입 무상선택2·3 기준]	우물천장	평천장(113타입은 적용)+직부등	우물천장+라인보드+리니어 조명 (조명특화1-1 대비 우물천장 확대)					
	주방(84A·C·D)	디자인 조명	일반 사각 매입등	디자인 조명(매입형)					
주방 특화1	주방가구 및 수전	상부 플랩장	일반 여닫이 상부장(PET 표면재)	유리 플랩장	3,520,000	1,620,000	3,540,000	3,400,000	2,650,000
		식당면 하부장 or 아일랜드장 (113타입 아일랜드장 확폭 및 독립형 후드 포함)	세로형 디자인(조명 없음)	하부장 디자인 특화(조명포함)					
		유리 장식장 (84A/84C/84D 해당)	주방상판 위 조명없는 오픈장	장식장(조명포함)					
		알파공간(소) 슬라이딩 도어 (84B·113 타입 제외)	목 여닫이 도어	유리 슬라이딩도어 (or 목여닫이 도어)					
		팬트리 유리 도어(113타입)	PET 표면재 가구 도어	유리 가구 도어					
		씽크수전(외산)	국산	외산(아메리칸스탠다드)					
주방 특화2	주방 마감	벽체 및 하부장 상판	벽체 : 국산타일(300*600) 상판 : 인조대리석(MMA)	세라믹박판패널 (중국산, 벽:6T/상판:12T)	3,500,000	2,960,000	3,550,000	3,740,000	3,900,000
욕실	욕실(2개소)	수전 및 악세서리	국산	외산(아메리칸스탠다드)	3,170,000	3,210,000	3,170,000	3,170,000	5,550,000

특화		샤워부스 프레임	일반(실버)	고급(니켈도금)					
		하부 수납장	-	공용욕실 : 세면대 일체형 부부욕실 : 하부 수납장					
	부부욕실(113타입)	벽체 타일	국산타일(300*600)	포세린 타일(600*1200_중국산)	-	-	-	-	

나) 가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플러스옵션			미선택시	플러스옵션	선택	약식표기별 판매가				
						84A	84B	84C	84D	113
가전	주방/ 식당	키친핏+키큰장	오픈형 냉장고 장 (선반 없음)	삼성전자(주)/ RR40C7995AP+RZ34C7865AP+RQ34C7945AP (연결키트 포함, 견본주택 기준, 좌우형에 따라 모델명 상이)	통합	5,520,000	5,450,000	5,520,000	5,200,000	6,270,000
		인덕션(3구)	가스쿡탑 3구 (하츠 : SGC-3605SABH)	디트리쉬 : DPI4320WK/DPI4320GK	개별	1,750,000	1,750,000	1,750,000	1,750,000	1,750,000
		식기세척기(12인용)	수납장	삼성전자(주) : DW80F71V1SEW	개별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전기오븐	수납장	경동나비엔매직 : EOB-3004	개별	420,000	420,000	420,000	420,000	420,000
	욕실	복합환풍기	일반 환기휀	힘펠 : FHD3-C150P	개별 (2개소)	1,180,000	1,180,000	1,180,000	1,180,000	1,180,000
	거실	씰링휀	-	쿠쿠 : CCF-132AB20W(52인치/화이트)	개별(조명없음)	430,000	430,000	430,000	430,000	430,000
	안방 발코니	전동빨래건조대	-	웰테크 : AL4000FS	개별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드레스룸	제습기	-	코스텔 CDD-600B	개별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1,060,000

다) 기본선택 품목

약식표기별	선택 내용			비고
	선택1(기본형)	선택2	선택3	
84A·C·D	침실 3개소+현관창고+알파룸 1개소	침실 3개소+현관창고/팬트리 분리형+알파공간(소)	침실 3개소+현관창고/팬트리 통합형+알파공간(소)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일정시점 이후, 선택 불가함

라) 추가 선택 품목 유의사항

(1) 공통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 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으며, 개별옵션 외 특화옵션은 분리 선택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의 계약조건(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단, 공사 수행중인 품목은 예외입니다.)
- 상기 추가 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소요자재를 선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 품목의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분양계약 시 또는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자재공급 지연, 품절, 품귀 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추가 선택 품목 전체가 반영된 "풀옵션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발코니 확장 시 기본마감과 추가 선택 품목 내용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내의 POP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욕실은 욕실-1, 부부욕실은 욕실-2과 동일한 용어로 본 공고문에서는 공용욕실과 부부욕실로 표기하였습니다.
- 도급계약 및 수급 여건, 발주 시기, 평면 구성 등에 따라 트리븐 브랜드를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각 품목별 판매가는 지역별로 판매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 각종 타일 등의 패턴은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설치되며,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은 다소 다를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 시공내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련세금(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품목별 계약금이 상이하며,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 계약체결 시 추가 선택 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 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 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추가 선택 품목 가격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제공되는 기본형 마감을 차감하여 산정하였으며, 옵션 유형별 조합 시 표에 없는 내용이 발생될 경우, 일부 마감 면적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예 : 주방특화1(가구) 선택+주방특화2(상판 및 벽체마감) 미선택)
- 추가 선택 품목의 각종 디자인, 색상 및 패턴, 가구의 경우는 수납형태 등은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본 아파트 여건에 맞게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도면, 홍보물 등의 가구 및 가구표현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 및 계약 시 선택한 사항이 우선하므로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또는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여 추가 선택 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 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시행수탁자의 무관하며, 시공사 두산에너빌리티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개별옵션 선택 시 유의사항

- 현관 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 중문 및 안방의 유리 슬라이딩 도어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 중문 및 드레스룸 도어 타입은 주택형별 사양(개폐위치, 사이즈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미선택 시 신발장의 형태, 규격, 설치 위치, 도어 사이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으며, 신발장과 이웃하여 경량벽체(기본 : 도배마감)가 시공됩니다.
- 추가 선택 품목 중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분리 및 시야 차단의 목적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중문 선택 시 공간상의 이유로 배선기구, 스프링클러, 환기디퓨저, 화재감지기, 조명기구의 배치 및 수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방과 드레스룸 사이 유리 슬라이딩 도어 미선택 시 오픈형으로 시공되며, 드레스룸 공간에 별도의 경량벽체(기본 : 도배마감) 및 유리 양개도어가 설치됩니다.
- 84A·C 타입의 경우, 무상선택2·3 선택 시 알파공간(소)에 적용되는 시스템선반은 현장여건에 따라 선반의 형태 및 수량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3타입 다용도실 시스템 선반 선택 시, 적용되는 시스템선반은 현장여건에 따라 선반의 형태 및 수량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붙박이장 선택 시 설치되는 가구의 크기 및 형태는 각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규격, 상세,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바 장식장 선택은 무상옵션 무상선택2 현관/팬트리 통합형 선택 시에는 적용이 가능하며, 선택 시 홈바장식장의 설치공간으로 인해 현관창고 공간이 다소 축소되며, 가구가 설치되는 바닥/벽/천장에는 마감이 미적용됩니다.
- 홈바 장식장 상판 및 벽에 적용되는 세라믹박판패널은 제품 특성상 시공방법에 따라 견본주택과 세대별로 색상, 패턴, 줄눈 나누기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품질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바 장식장의 조명 스위치, 콘센트의 위치 및 형태는 본공사 시 시공성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113타입 홈바장식장은 유리도어 키큰장과 함께 선택이 가능하며, 유리의 패턴, 색상 등은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타일형 강마루(섬유판)의 제조사 및 규격, 나누기, 색상 및 패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3타입 알파룸 유리월 선택 시, 타일형 강마루(섬유판)가 함께 시공되며, 본공사 시 유리월 상하부 레일 및 프레임의 형태 및 바닥 돌출 높이,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마감특화 선택 시 유의사항

- 타일 및 패널의 줄눈 나누기 및 패턴은 본공사 시 자재의 특성, 시공성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거실 아트월 및 주방의 세라믹박판패널은 천연석 패턴의 디자인으로 본공사 시 세대별로 색상 및 패턴이 상이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줄눈 나누기도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패널 나누기와 돌출 두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미선택 시 벽지로 시공됩니다.
- 벽체 패널마감은 본공사 시 접합부의 돌출, 들뜸 현상, 고정하기 위한 타카(못)자국이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벽체 패널마감 선택 시 PET패널(픽처레일 천장 몰딩 포함)과 시트패널(일반 천장 몰딩)로 구분되어 시공되므로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특화1" 113타입의 벽체 패널은 거실과 알파룸 유리월 미선택 시, 거실면은 경량벽체 위 PET패널, 복도면은 경량벽체 위 시트패널로 시공됩니다.
- "마감특화4" 113타입의 유리월 선택 시, 복도면에는 시트패널(픽처레일 몰딩 없음)로 시공됩니다.

(4) 수납특화 선택 시 유의사항

- 현장여건에 따라 가구의 사이즈 및 수납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욕실 세면대 하부장 선택 시 하부장에 맞는 세면기 타입으로 변경됩니다.
- 다용도실의 수납가구는 세탁기/건조기 직렬형 설치를 고려한 특화 사항으로 직렬형 타입 가구 선택만 가능하며, 가구 선택 시 가스계량기의 위치가 미선택 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의 수납가구 상부장은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 설치로 인해 크기가 축소되고,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의 수납가구 선택 시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제공되는 2단 세탁 선반은 미적용되며 비용에 차감하여 반영되어 있습니다.

(5) 조명특화 선택 시 유의사항

- 거실 천장 간접박스 시공 시 조명효과 및 유지보수를 위해 조명기구가 노출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 선택 시 반영되는 내용은 식당 우물천장(113타입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기본 제공), 거실 천장 간접등 2개소(113타입은 거실 유리월 선택 시 1개소는 다운라이트 2개 적용), 거실 및 식당 천장 리니어 조명 및 라인보드, 주방 천장 라인형 매입 조명이며, 세대 타입별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합니다.
- 천장 라인보드는 자재의 특성상 발코니확장 선택 시 제공되는 주방상판 MMA(인조대리석)와 같이 이음매가 생길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설치 방향 및 이음새의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미선택 시 반영되는 내용은 거실 및 식당 천장 직부등, 주방 일반 매입등으로 설치 위치 및 타입이 고정되어 있어 설치 위치 및 타입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조명특화1-1과 1-2의 차이점은 84A·C·D 타입 무상 기본 선택1의 방 3개와 알파룸 선택 시 식당의 우물천장의 크기가 타입별로 약 1,040 ~1,100mm가 축소되어 차이가 발생되며, 치수의 차이로 인한 공사비의 차이는 없습니다.

- 113타입 식당 조명특화 미선택 시 발코니확장 선택에서 제공되는 우물천장 사이즈 약 600mm가 축소됩니다.
- 조명특화 선택 시 리니어 조명은 제품 특성상 이음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주방특화 선택 시 유의사항

- "주방특화1" 미선택 시, 주방 상부장은 측면 상부장과 동일한 PET표면재 여닫이형으로 연장(조명 없음), 식당면 하부장은 조명없는 일반 세로형 디자인, 식당면 하부장 상판 위 장식장은 오픈형 목선반(84B/113타입은 없음), 84A·C·D타입 알파공간(소), 113타입 침실4는 목여닫이 도어 등으로 시공됩니다.
- "주방특화1"선택 시 84A·C·D타입 무상선택2·3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알파공간(소)의 유리 슬라이딩 도어는 기호에 따라 가격 변동 없이 목여닫이 도어로 변경할 수 있으며, 유리슬라이딩 도어의 유리 및 프레임 색상, 하드웨어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1"은 고급형 디자인 특화에 따라 기본형 가구 대비 상부장의 크기 및 수납공간이 축소되며, 수납 선반 형태도 상이하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특화1" 의 수납형태 및 분할, 내부 구성, 악세서리 설치 위치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1" 선택 시 설치되는 상부장 상하부조명은 가구 시공성 향상 및 전기/설비 간섭 구간으로 인해 본공사 시 규격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설치 위치 및 길이가 상이합니다.
- "주방특화1" 선택 + "주방특화2" 미선택 시에 벽면에 적용되는 세라믹박판패널의 적용면적 변경에 따른 가격은 자재의 특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변동은 없습니다.
- "주방특화1" 선택 시, 상부장 상하부조명 설치에 따라 따른 안정기가 상부장 내부에 점검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수납공간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부장 후면에는 전선 일부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1" 선택 시, 113타입 팬트리에만 유리도어가 적용되며, 미선택 시 PET표면재 가구도어로 시공됩니다.
- "주방특화1"선택 후 주방특화2 미선택 시 발코니확장 선택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주방 아일랜드장 상판 MMA(인조대리석)는 자재 특성상 이음매가 발생됩니다.("주방특화1" 미선택과 "주방특화2" 선택 시 주방 아일랜드장 상판 세라믹박판패널 세로 사이즈는 700mm이나, 자재 특성상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 113타입의 경우, "주방특화1" 미선택 시, 주방 아일랜드장 상부 세로폭이 900mm에서 700mm로 축소되고 수납공간은 주방 안쪽에만 반영됩니다.
- 주방가구의 조명 스위치 외 콘센트의 위치 및 형태는 본공사 시 시공성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2"에 적용되는 벽체 및 상판 세라믹박판패널 미선택 시에는 씽크대 벽면 일반 주방벽(300*600)타일, 상판은 MMA(인조대리석)로 시공되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13타입의 경우, "주방특화2" 선택 시, 주방창호 시트는 세라믹박판패널과 유사한 칼라로 시공되며, 미선택 시에는 메인시트로 시공되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주방특화2"의 주방상판 및 벽체 세라믹박판패널의 패턴 및 나누기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절단에 의한 접합 라인이 발생합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비노출면에는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방은 "주방특화1" 및 "주방특화 2" 모두 적용되어 있으며, "주방특화1" 또는 "주방특화2" 개별 선택이 가능합니다.
-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는 주방가전 제품과 가구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7) 욕실특화 선택 시 유의사항

- 욕실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은 불가합니다.
- 욕실특화 구성은 공용욕실 세면대 일체형 하부장, 부부욕실 세면대 하부장, 외산 수전(세면대, 샤워 및 욕조), 코너선반, 휴지걸이 및 욕조 수건걸이와 샤워부스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선택 시 국산 일반형 수전 및 악세서리, 샤워부스 프레임은 일반 실버 재질로 시공되므로 견본주택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샤워부스의 제조사, 색상, 규격, 형태 등 상세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부욕실 하부장 선택 시 후면, 바닥 등 마감은 미적용되며, 가구의 크기, 형태,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3타입 부부욕실에만 적용되는 벽체 타일은 본공사 시 패턴, 나누기 및 상세 사이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하부장 선택 시 바닥 및 벽에는 기본형과 동일하게 타일이 미시공됩니다.

(8) 가전 선택 시 유의사항

- 욕실 복합 환기휀 선택에 따라 욕실 천장 점검구, 욕실 조명의 설치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기휀 옵션은 2개소(공용욕실, 부부욕실)에 설치되며 부분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리모컨 제어 가능)
- 욕실 복합 환기휀 옵션 선택 시 기본 설치되는 욕실휀은(제조사는 본공사 시 확정) 설치되지 않으며, 기본 욕실휀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드레스룸 제습기, 거실씰링휀은 정상 작동 여부, 시스템연동 확인 등을 위한 시운전을 공사 중 진행하며, 시운전 중 필터 등에 약간의 먼지가 부착될 경우 필터교체 및 청소 등의 방식으로 먼지를 제거할 수 있으나 제품교체는 불가능하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 드레스룸 제습기는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제조사 여건에 따라 브랜드 및 제품,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의 설치 위치에 따라 전등 및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환기 디퓨저 등의 부착물 위치 및 제품의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씰링휀은 설치 위치 문제로 조명특화 선택 시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키친핏 가구 옵션(냉장/냉동/김치) 선택 시 맞춤형 키큰장은 일괄계약 품목으로 분리하여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계약자분이 개별로 일반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일반장이(선반 없음) 시공되고, 키큰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장의 형태와 규격 및 마감 기준은 타입별 상이하여 개별로 설치하시는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일부 기종은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사이즈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키친핏 선택 시 함께 제공되는 키큰장은 타입별로 크기가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또는 추후 추가 옵션선택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키친핏 가전(유상)으로 적용된 것으로 일반 냉장고 설치 시 냉장고 사이즈로 인해 냉장고 기본 오픈장보다 식당면으로 돌출됩니다.
- 84A·C·D 키친핏 선택 시 통합으로 선택되는 키큰장은 PET 도어+목선반(조명 없음)이 적용됩니다.
- 113타입 키친핏 선택 시 통합으로 선택되는 키큰장은 유리도어+목선반(조명 있음) 1개가 적용됩니다.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일반 및 주방가구와 동일하게 가구가 설치되는 바닥, 벽에는 별도의 마감이 미적용됩니다.
- 인덕션 미선택 시 가스 3구 가스쿡탑 제품이 설치되고 주방에 가스배관이 노출되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덕션 설치 시에는 주방에 가스배관 미시공)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미선택 시에는 해당 위치에 수납공간이 제공되며, 수납공간의 형태, 구성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방 발코니 전동빨래건조대 선택 시 조명 일체형 타입으로 발코니에 별도의 조명이 설치되지 않으며, 미선택 시에서 천장 또는 벽체에 발코니 전용 조명이 설치됩니다.
- 모든 가전은 본공사 시 제조사 등에 여건에 따라 브랜드 및 제품,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무상옵션

- 84A·C·D타입 선택형인 선택 3 현관/팬트리 통합형 선택 시 현관과 동일 레벨로 바닥타일(난방 미적용)로 시공되며, 내부 벽체 및 천장마감은 현관창고와 동일합니다.
- 84A·C·D타입 선택형인 현관/팬트리 통합형 선택 시 내부 수납공간 활용을 위해 가구도어는 현관에만 설치됩니다.
- 84A·C·D타입 선택형인 현관/팬트리 분리형 선택 시 팬트리는 거실과 동일한 마루가 시공되며, 난방에 따른 온도조절기는 미적용됩니다.
- 84A·C·D타입 무상선택 2·3 선택 시 제공되는 알파룸(소) 공간에 시스템선반은 추가 선택 품목이므로 공간만 제공되며, 기본마감인 목여닫이도어 설치로 인해 스위치 위치는 견본주택에 추가 선택 품목으로 설치된 유리 슬라이딩 도어 위치와 반대 방향에 설치됩니다.
- 84A·C·D타입은 무상선택1 선택 시 방 4개 구성으로 인해 현관창고는 제공되나, 주방 팬트리는 미제공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A, 84C 타입에 해당하는 추가 선택품목인 홈바 장식장 선택 시에는 위 선택 내용을 선택할 수 없으며, 84D 타입에 해당하는 추가 선택품목인 홈바 장식장 선택 시에는 무상선택 2를 적용하나, 펜트리의 문 방향이 복도면에 설치되고 선반 구성이 변경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A·C·D타입은 알파룸 또는 알파공간(소)의 도어 형태 및 위치에 따라 내부 스위치 형태 및 위치가 변경되며, 무상선택1 알파룸 선택 시에만 온도조절기가 추가 설치됩니다.
- 무상선택은 공사 일정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일정 시점 이후에는 선택이 불가하며, 선택 타입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10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공통사항**

공통사항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 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조치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둘째자리로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이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정산 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입접 도로 및 경사지, 조망권, 주변개발여건, 유해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추가 선택 품목이 모두 반영되어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 옵션형 및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제공되는 기본마감에 대한 내용은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현황 및 개발계획, 예정사항 등은 지자체 및 개발주체, 관계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취소, 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견본주택,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조감도, 투시도, 각종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인접 건축물과 도로, 경사지 옹벽, 단지 내 조경 시설물 및 식재, 주차계획, 포장계획 등), 공급간지,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공급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실입주일이 만료일보다 앞서는 경우 실입주일)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전기료, 가스비, 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선행시공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택형은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과 쇼파 설치 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음)이 있으므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현장여건 및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지하(커뮤니티시설, 기계 및 전기실, 창고 공간 등 포함) 및 지상주차장, 지상 커뮤니티시설, 근린생활시설, 조경(포장패턴, 식재, 놀이터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 등) 등은 본공사 시 인허가청 협의나 공사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평면, 입면 및 단면 높이, 마감재, 마감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주의 형태(조명 포함), 아파트 외벽 경관조명의 개소, 위치, 형태 등 -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차량 동선, 소방전용구역 등), 단지 내 보도 및 차량 경사로(캐노피 구조물 포함) 형태 및 경사도, 각종 옹벽의 종류 및 높이 등 - 단지 내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 줄눈 및 패턴과 색상, 로고 등의 위치, 마감 재질 등 - 동출입구 및 캐노피, 문주 및 맘스존(파고라 포함),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한전패드(단지의 전력공급을 위해 한전에서 설치 요구 시 설치될 경우임), 보도 및 도로 포장, D.A(급배기구), 외부경사로 및 옥외 엘리베이터, 104동 우측 썬큰, 비상차량동선, 소방전용주차구역 등 - 기부채납 시설인 문화공원, 도로, 주차장 및 완충녹지의 면적, 식재 및 조경시설, 바닥포장 등과 주차장의 면적, 형태 등 - 단지 경계에 설치되는 방음벽의 설치 여부, 설치 구간, 재료, 높이 등 - 기타 「주택법」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계획승인 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사업계획승인 변경에 대해서는 「주택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통보 예정임) • 계약체결 이후, 단지 외부 도로 및 인접 단지 개발사항 등에 의한 변경 사항은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현장 여건, 인허가 관청의 협의 등에 따라 주변시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사업계획변경승인 포함)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재 및 부대복리시설, 단지 조경(수목, 수공간 및 시설물), 피트니스센터 및 골프연습장 내부 운동기구(본공사 시 제품 사양 및 형태는 각종 홍보물 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 및 가구 등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입주 후, 본 사업부지와 인접한 도로, 건축물 및 시설물, 인접 공동주택 등으로 인해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주변 개발계획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대지지분은 시공 시 단지 내 각 시설들의 면적 및 규모변경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세대별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계약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장 내 도시가스는 대성청정에너지(주)를 통하여 공급 예정입니다. • "㈜한국자산신탁"과 "㈜에스케이리츠"간에 신탁계약이 종료(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사유의 발생, 신탁계약의 해지 등을 의미함)되는 시점 또는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의 명의로 이전된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본 건축물에 대한 분양계약 관리와 "㈜한국자산신탁"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에스케이리츠"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신탁계약과 관련한 세부 유의사항은 본 공고문 "11.기타사항"의 "차입형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외부 여건	• 단지 내 주동 배치계획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동 및 층, 향, 세대에 따라 일조 및 조망, 채광, 통풍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대지경계선에 면하여 있는 근린공원은 입주민 외 일반인들의 통행, 이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출입, 통행의 제한을 둘 수 없으며, 일반인들의 이용에 따른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기부채납 시설인 문화공원, 주차장 등이 인접해 있어 이용자 등으로부터의 빛 공해,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와 문화공원 사이에는 경계휀스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모형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등은 각각의 개발주체의 계획, 추진 예정 또는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세부 내용은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의 폭, 레벨, 형태 및 단지 인접부의 경사지 레벨, 조성 방식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청 협의 등에 따라 단지 모형 및 각종 CG와 상이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도로와 문화공원, 주차장 등 인접시설의 경우 관할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여건에 따라 형태, 레벨,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감재	• 발코니 비확장형과 확장형의 마감재 내용이 상이하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기본제공되는 품목과 추가 선택 품목은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은 거실 아트월 타일, 우물천장, 각종 시스템가구, 발코니 창호, 주방 아일랜드장(상부장 하부 조명 포함) 및 주방 상판 콘센트 등이 미제공이 되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반드시 마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는 주택형별에 따라 재질, 색상, 패턴, 크기 및 길이(가구 포함), 형태, 공간별 적용 품목 등이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분양홍보물에 반영된 평면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합니다. • 욕조 설치면에는 타일 및 바닥난방(샤워부스 포함)이 미시공되고 타일 나누기(모서리에는 코너비드가 시공됨)가 변경될 수 있고, 욕조가 설치되는 공용욕실의 배수구는 1개소만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복도 및 거실 패널, 거실 1면 아트월 세라믹박판패널, 주방 벽체와 주방가구 상판에는 세라믹박판패널, 식당 및 거실 천장에는 추가선택 품목인 우물천장(113타입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기본 제공)과 리니어 조명(라인보드 포함), 주방 천장 특화 조명, 거실 아트월 벽체 간접등, 주방에는 유리와 조명이 조화된 상부장과 장식장(알파공간 유리 슬라이딩 도어 포함), 식당 홈바 장식장, 각종 가전류 및 위생도기와 수전류 등의 추가 선택 품목 등이 시공되어 있으므로 미선택 시 적용되는 기본 마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가구 하부(난방 포함) 및 후면, 천장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에 적용된 모든 가구는 견본주택용으로 본공사 시 동일 마감으로 적용되나, 현장여건에 따라 수납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일반가구, PVC 창호, 욕실장, 샤워부스, 발코니 난간 등은 견본주택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공사 시 입찰을 통해 제조사가 확정됩니다. • 세대에 적용된 타일의 경우, 동일한 제품이나 본공사시 견본주택과 달리 패턴(세대별로 패턴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색상, 나누기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모서리에는 코너비드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내/외부에 천연자재가 적용되는 경우,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 중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인 빌트인 가전 등이 설치되는 바닥(난방 포함), 벽체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목창호, 시트 또는 페트패널(추가 선택 품목) 등의 고정을 위해 타카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시공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디테일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각 실 안목치수는 발코니 비확장형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다소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출입문에 설치되는 손끼임방지장치는 관련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착형 타입이 적용되며,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타입 및 디자인이 결정될 예정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 추가선택 미선택 시 식당면 하부장 상판에 기본으로 설치되는 MMA(인조대리석)는 자재 규격 특성상 이음새가 발생됩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사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견본 주택/ 홍보물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인 전체가 반영된 "풀옵션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 내 목창호류, 가구류, 타일,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일정기간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포함 품목(분양승인 신청서류 기준)과 전시품(조명, 가구, 그림, 장식물, 각종 소품 등)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분양승인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및 세대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단지 주변현황, 전기, 설비기기, 실제 마감재 색상 등은 표현되지 않아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스 계량기, 실외기 위치 등은 본공사 시 실제와 상이할 수 있고, 하향식피난구의 위치도 피난을 위해 층별로 상이합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 홀 및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및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계획승인 도서(공사 중 사업계획승인 변경도서 포함)에 준합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부에 설치된 84C 주택형에 설치되는 홈IoT 시연을 위한 전동커튼, 각종 전시조명, 각종 소품 및 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책상 및 의자, 식탁 및 의자, 소파 및 테이블, 장식장, 화장대 의자 등 포함), 벽 패널 및 장식물, 그림,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세탁기, 건조기, 밥솥, 다용도실 용품, 토스터, 커피머신, 의류관리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시용품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소화기,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와 무관하며 본공사 시 소방 관련 법률 등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선홈통, 배수구, 점검구, 스프링클러,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공사 시 냉방전용(난방불가) 시스템에어컨이 추가 선택 품목(삼성전자 일반형)으로 제공되며, 본공사 시 추가 선택 품목인 시스템에어컨의 사양 및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세대 외부창호 밖으로 설치된 조경공간 또는 사인물 등은 견본주택 연출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본공사 시에는 제외됩니다 • 홈페이지의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전시 및 기본제공 품목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 선택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공사 시에는 전시품과 전시용 조명, 설비 등은 부속배선·배관을 포함하여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입구 문틀은 전시용 프레임이 설치 되었으며, 본공사 시 일반 철재 현관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관련 유의사항	• 본 사업지의 학교설립 및 학생배치는 관할교육청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및 방침과는 무관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로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일초등학교 및 영주가흥초등학교에 배치 예정이나, 통학구역의 조정, 학생수용계획 변경 및 인근지역 주택개발사업, 학교 교실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학생은 무시험입학중학교군 6개교(영주중, 영광중, 대영중, 영주여중, 영광여중, 동산여중) 내 배치 예정이며, 1지망교 정원 초과로 학군 내 상대적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될 경우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시설 등은 통학구역 및 학교군 내 공동주택 개발계획의 변경(공급면적, 세대수, 입주시기, 분양방법 등) 및 새로운 개발계획 승인·시행 등 학생 배치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학생 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학생수,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임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설계변경		•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제3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받는 사항 외의 사업계획승인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변경처리 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완료 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할(경미한 변경사항 제외) 예정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형식은 현장여건 및 지질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외부 레벨, 경사지 옹벽 조성 형태, 높이 및 재료, 기부채납 시설인 문화공원 및 주차장의 면적, 조성 내용 등도 현장 여건 및 인허가청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사면의 안전성 확보 및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외부 토목옹벽 및 조경석 구간, 조성 레벨과 방음벽의 형태 및 크기, 문주의 형태 및 경관조명의 설치 위치 및 개소 등은 인허가청 협의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공통**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등의 외관디자인(마감재 패턴, 색채 및 사인물, 창호 색상 및 형태, 계단실 창호, 난간 형태 및 색상, 지붕 및 옥상구조물 형태 및 색채 등), 경사지 및 외부계단의 형태, 문주의 위치 및 형태, 주차장 경사로 캐노피 구조물의 형태, 보도 포장 패턴 및 색상 등이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시공사 특화디자인 등에 따라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난간, 토목옹벽 등의 방법으로 시공될 수 있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측량 성과도 및 인접 건축물, 보도 등의 현황에 따라 단지 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부대복리시설, 층고 및 천장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대지 주위 도로 및 선형, 조경 및 토목시설물의 위치, 인접도로 및 문화공원과의 레벨 차, 경사면의 형태 및 높이, 재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 동의없이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인접대지 레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노출범위(높이, 길이), 형태, 마감사양, 디자인 등이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프로그램, 평면(운동기구 및 고정식 가구 배치, 수량 포함), 입면, 단면 등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공간에 조성되는 수목의 종류, 수량 및 위치와 외부 조경 및 수경시설 등의 종류, 형태 및 위치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축소 제작된 것으로 색채, 패턴, 마감 재질, 크기, 조경(수목의 종류, 위치 및 수량, 놀이터 및 휴게시설, 파고라, 수경시설 등) 및 각종 시설물(문주, 기계 및 전기 관련 급배기구, 외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실, 부속동 실외기 공간 등)의 내용이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공사 중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기본 제공되는 가구(이동식 가구 제외) 및 마감재 등이 현장여건 및 인테리어설계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의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지 내부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등을 위해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본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 및 조경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건축물의 외관 등에 대해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주변현황, 개발계획, 사업계획승인 조건, 문화공원 및 주차장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등)의 협의 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 사용 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에 대해서는 열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BI/CI(적용 시) 조명(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및 사인물 포함), 옹벽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영구배수시스템 적용 시 포함)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조망과 향, 일조량, 사생활 침해 정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부의 실외기 공간,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생활자원보관시설 인접 세대에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과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 및 건물 높이 등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 출입구,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조명형 BI/CI 등을 설치할 경우, 야간 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노출되는 외벽은 부분적으로 오픈형으로 우수 처리를 위한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이 설치된 인접 동은 이용에 따른 간섭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냉난방시설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채광창 유무 포함) 등 공용부분은 공간 크기 및 설계 제약 등에 따라 형태, 재질, 크기, 색채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세대 공용 창고의 경우, 건축마감 및 창고 보관함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고 공간만 제공됩니다.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분양 이후 위치 및 내용이 확정되며, 미설치 시 문화예술진흥기금 납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트리븐 홈페이지에 반영된 시설 및 품목은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트리븐 가흥에만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단지에 면하는 문화공원 및 주차장은 공사 완료 후 기부채납 시설이므로 인근 주민의 이용으로 인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차대수는 총 1,128대(아파트 1,126대, 근린생활시설 2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아파트용 주차대수는 지상 1층 57대, 지하 1층 514대, 지하 2층 555대, 근린생활시설용 주차대수는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에(공동 사용) 2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본공사 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따라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 차량은 부지 남측에 위치한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2개소를 통해 진입하여 각각의 경사로를 통해 지하 1층으로 진입하여 지하 1층 ~ 지하 2층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상 1층은 전기차 전용주차장으로 일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107동 전면 지상주차장에는 카쉐어링 주차공간 1개소와 학원차량 주차공간 1개소가 별도로 설치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 및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자연석 등의 모양, 재질, 문양, 형태, 높이 및 위치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등의 단지 주변 시설 및 주변 유해시설의 위치 등 단지 주변 및 단지 내부 여건을 청약 및 계약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 파일, 옹벽 등의 설치 위치 및 내용, 규모, 규격 등은 굴토 후 지내력 검사 결과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105동을 제외하고 각 주동 지붕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공사 현장여건에 따라서 설치 위치, 내용, 규격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준공 이후,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사용 및 유지관리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102동 북측 방음벽의 길이 및 높이는 소음예측평가 보고서를 기준으로 계획되었으며, 레벨고 174.9m(완충녹지 및 도로기준) 기준, 높이 약 17.5m, 길이 약 110m 구간에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여건, 인허가청 협의 및 소음평가 등에 의해 본공사 시 길이나 높이, 마감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시설로 유지관리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므로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에는 영구배수 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며, 굴토후 지반 현황 및 시공조건 등에 따라 설치 유무, 설치 위치, 설치 규모 및 규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이후, 설치된 집수정을 포함한 영구배수 시스템의 유지관리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주차시 기둥 및 내력벽에 의해 차량 문 개폐 및 통행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치	• 모형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단지주변 경계부는 현장 시공여건, 현황 레벨, 인근 도로레벨 등에 따라 단차부 옹벽 형태 및 마감, 102동 북쪽 방음벽의 설치구간 및 높이 등에 대해서는 본공사 시 현장 여건 및 인허가청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문주, 도로 선형, 부대복리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 이동, 형태 등이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는 분양홍보물을 기준으로 시공될 예정이나, 사용성 및 인허가청 협의 등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시 동별 주출입구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동별 주차 배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없으며, 각 동 출입구까지의 동선 길이와 전실 및 홀의 형태, 크기 등이 다릅니다. • 지상 1층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주차장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와 가까운 2개소 공간에 설치되어 동별·세대별 형평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모든 주차구획은 구조적으로 동별·세대별로 구획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구획 운영은 관리주체 책무입니다. • 단지 주변 도로와 단지 내 레벨 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CI 및 BI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법」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신축되는 인접 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의해 조망 및 일조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에 계획된 대지레벨 차이에 의해 반영된 옹벽, 난간 등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형태, 크기, 길이, 높이, 재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면동/후면동의 각 주동 사이의 거리가 근접하여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각 동 1층 출입구에 계획되어 있으나, 본공사 시 사용성 및 지상공간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하 1층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택배 차량(차량높이 2,700㎜미만만 해당)이 지하 1층을 이용할 경우,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지상 1층 경사로를 통해 지하 1층으로 출입할 수 있으며, 지하 2층으로 이동은 주차 경사로 및 천장고의 높이 관계로 불가합니다. • 주차장 입출구 인근 세대는 출차주의등의 소음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102동, 107동의 일부 세대는 야간에 주차 경사로에서 출차하는 자동차에 의해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세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동	• 단위세대 창, 공용부 창의 열림 방향, 크기 및 위치(홀에 창호가 있는 105동의 경우는 매층, 전체 동 계단실은 5개 층마다 자동폐쇄장치 설치)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의 석재마감은 필로티 포함 3개 층에 적용(일부동 제외)되며, 패턴, 색상 및 줄눈의 간격 등은 실시설계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하 주차장 외벽 및 아파트동 PIT, 지하 부대시설 외벽 등 노출되는 부분에는 석재질감 도장이 적용 예정이나, 입면의 아파트 외부 마감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승인 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벽에 경관조명이 적용될 경우, 건축물 구조상 외벽 부착형 조명으로 설치되며, 인허가청 협의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단지모형과 다르게 설치 부위가 축소되거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 타입 및 형태 등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의 장애인 램프 위치/길이, 부대복리시설의 출입구, 화장실, 점자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인허가청 협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어 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규격, 사양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동출입구, 부대시설, 조경 구간 등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콘크리트 난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연결되는 각동 아파트 엘리베이터홀과의 거리, 통로의 길이 및 폭 등은 동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구획 및 장애인주차구역 등으로 인해 일부 동은 출입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홀, 필로티(벽 및 기둥 석재뿜칠 도장) 등의 평면과 입면 계획(재료, 디자인 등) 등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난간 턱 높이,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지하층 출입문 및 1층 로비 방풍실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필로티층 상부에는 주택관련 법규에 따라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의 형태(옥상 조형물, 외벽줄눈 문양, 저층부 석재, 동 출입구 등), 재질 및 색채 등은 구조내력 확보, 미관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노출 설치됩니다. • TV 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방재실과 가깝고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6동, 107동, 108동 옥상에는 단지 내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광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공사 시 수량, 위치, 규격 및 설치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의 일부 구간에 상부 실로 인해 설치되는 단열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야간경관조명 설치 시 이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상승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보도, 차로, 비상차로, 쓰레기수거차량동선 등의 설치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동번호 등이 외벽에 설치될 수 있으며, 모형과 달리 변경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과 엘리베이터홀 천정부분 등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 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제연구간에 해당되는 엘리베이터 홀과 연계된 단위세대 현관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붕에 설치되는 우수 처리를 위한 배수구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개소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외부 각종 시설물의 위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지하층 급배기구(D.A) 위치가 각동 1층에 면하는 세대는 해당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주동의 필로티 내,외부와 저층부 주변에 제연휀룸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활동 및 점검 시 작동되는 휀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한 공기안전매트 설치 공간 등으로 인하여 소방부서 공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제한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동별로 2호 조합당 엘리베이터는 1개소 설치되나, 3호 조합인 103동, 105동의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가 2개소 설치되며, 동별로 엘리베이터 설치 개소 및 속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규격·사양은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라인별 엘리베이터 홀 형태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채광창의 위치 및 창호 크기 등 채광 조건이 상이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이나 점검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필로티의 천장고는 천장 내 설비 및 구조계획에 따라 본공사 시 일부 또는 전부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각층 공용부에 설치되는 EPS, TPS, PS실 내부에는 전기, 통신, 소방설비가 설치되며, 별도의 건축마감은 없습니다. • 1층에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외부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고, 지하1층에 설치하는 피트니스, 스터디카페는 지하주차장과 썬큰을 통하여 출입가능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3동 1층에 어린이집 및 경로당 계획되어 있어 주간 운영시간에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104동에 인접한 지하층에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스터디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 106동 1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계획되어 있어 주간 운영시간에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6동 1층에는 주민카페가 계획되어 있어 주간 운영시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7동 1층에 관리사무소(방재실, MDF실 포함), 작은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분양홍보물,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의 내외부 디자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내외부 마감재 색상, 재질 및 패턴, 내부 평면 및 구조, 창호 재질 및 형태 등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면적 변경이 계약체결 이후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및 차단기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는 옥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인접 세대의 환경권(조망, 소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층 주민카페,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의 실외기실은 해당 시설 내부에 설치될 예정으로 소음, 진동, 수증기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 커뮤니티시설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실은 실내골프연습장 외벽 및 103동과 인접한 곳에 설치될 예정으로 소음, 진동, 수증기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RFID종량기기), 생활자원보관시설, 주차장의 운영·유지·보수·관리 방안은 추후 관리주체가 결정하여 운영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상가에 인접한 지상주차장 인근에 휀스형으로 설치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형태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진출입, 경사로 부분은 차량통행 시 차량경고등 및 경고음, 노면마찰음 등 으로 인한 빛 공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차로 높이와 주차구획 유효높이는 분양 후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일부 대형차 등의 진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의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규모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으며,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도로에서의 진입 레벨 등도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옥상부와 커뮤니티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옥상부에 실외기가 설치됨으로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단, 실외기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계약자의 경우,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면적 과다, 공용시설물(진출입구 등) 공동사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 관리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관련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 출입구 및 주차장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이용과 유지관리는 관리주체의 책무입니다. • 지하 1층 주차장, 지하 2층 주차장에 설치된 창고는 지하층에 설치됨에 따라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하며, 창고의 운영은 관리주체의 책무입니다. • 본 단지는 대부분의 주민공동시설이 지상1층에 설치되며,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등으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스터디카페는 '작심' 브랜드로 운영 개시일로부터 10년 간 운영될 예정이며, 운영 기간 만료 후 브랜드 사용 및 운영 방식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실내 골프연습장의 스크린골프 타석의 수, 위치, 시뮬레이터 장비(센서, 프로젝터, 스크린, 타석매트 등)의 제조사·모델·사양은 실시설계, 현장여건 및 제품 수급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홍보물·모형에 표현된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골프 소프트웨어 이용료(업데이트 비용, 통신회선 비용, 결제·예약 시스템 이용료 등 및 무상 서비스 기간 경과 후 발생하는 제반 비용)는 입주자가 부담이며, 사용 및 운영 방식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터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인근 세대는 계약 카탈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제외)은 에너지절약계획서에 준하여 실별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였으며, 공용부(홀, 로비, 복도 등)에는 별도로 냉·난방 설비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단위세대	**공통**	•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설치됩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단위세대의 거실 및 침실의 천장고는 2,300mm(우물천정은 2,400mm임)이며,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안목치수는 발코니 비확장 시 마감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발코니 확장 또는 추가선택품목 마감 적용에 따라 각 실별 내부 안목치수가 다소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102동 북측 방음벽으로 인해 일부 저층부 세대는 조망 및 일조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공간구성 및 형태, 마감재 수준 및 내용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색상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PVC 창호 및 가구 등은 견본주택 용으로 본공사 시 입찰에 의해 동등 이상 마감의 제품으로 선정하여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소비자의 관리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는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 간 벽체 종류는 분양면적 내에서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작업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세대 간 벽의 임시 개구부가 발생될 경우, 세대간 소음기준에 충족되도록 조적벽 또는 경량벽체로 시공됩니다. • 콘크리트 벽체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 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콘크리트 벽체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콘크리트 벽체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기본제공 품목 및 추가 선택 품목이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저층부 석재 등 마감 적용 시, 별도 마감적용 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 마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 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및 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타입별 공간 및 가구 치수 등을 입주 시 실측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샤워부스, 욕조,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유상) 미적용 시에는 거실 및 복도에는 벽지 및 PVC 걸레받이, 거실 아트월 1면에 포세린 타일(발코니 확장 선택 시)이 시공됩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의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에 적용되는 추가 선택 품목 현관 중문은 세대 내 인테리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품목으로 단열과 기밀을 목적으로 하는 창호 설치가 아니며, 바닥 및 천장에 프레임 및 레일이 설치됩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엘리베이터 홀 또는 복도에 창호가 없어 채광 및 환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 상담 및 도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실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냉매매립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되며, 시스템 에어컨 계약 이후 선택 취소 시, 기본제공 품목인 냉매매립배관의 시공은 불가합니다. • 1층 정원 및 옥상은 관련규정에 따라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콘센트, 단자함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배수구 및 선홈통의 개소와 위치는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다용도실(세탁실)에는 배수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발코니 및 다용도실(세탁실), 실외기실, 욕실, 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경우, 바닥구배 시공 및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에 따라 타일 나누

		기, 천장 높이 및 단차가 도면 및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오수 및 우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은 견본주택 내용에 따르되,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후드장 상부는 수납이 제한적입니다. • 분전반, 통신 단자함, 콘센트, 통신수구 및 스위치의 위치, 제원, 규격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벽 및 세대 간벽, 층 차이 부분 등에 단열재가 설치되는 부위는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경량벽체인 경우,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하고, 천장 석고보드 부위와 벽체 석고보드 부위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별 치수에는 천장 몰딩이나 하부 걸레받이 등의 치수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 가전제품 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벽(PD 포함) 및 기타 조적벽 등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비내력 골조 혹은 경량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의 경우 수동개폐형 제품으로 시공되며, 에어컨 가동 전 반드시 입주자가 직접 개방 후 이용해야 합니다. • 지상 1층 세대의 실외기실 그릴의 경우 인허가 사항으로 인해 시스템루버 대피창형이 설치되며 내부에 탈출용 손잡이가 설치됩니다. •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계약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내 설치되는 통신 단자함의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 및 건조기 용량 및 모델에 따라 발코니 내 병렬 또는 상·하 직렬 배치가 불가하오니, 입주 후 배치를 결정해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용량 세탁기 및 건조기 반입 시 다용도실(세탁실) 출입문으로 간섭으로 인해 출입문 탈착 후 반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각 세대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발코니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물건을 적재할 수 없으며,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단위세대 내 PIT 등을 활용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 실외기실	• 발코니(실외기실, 다용도실(세탁실) 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고, 사양,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거나 급수가 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세탁실)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및 기타 발코니의 외부창호 및 난간턱 높이와 수벽의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탁기/건조기 직렬배치형 가구 추가 선택 품목 미선택 시에는 일반 벽부착형 소폭의 2단 선반(고정식)이 설치됩니다. • 다용도실(세탁실)의 가스배관, 가스계량기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으로 인해 외부창에 블라인드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의 선홈통 및 배수구는 우수 처리를 위한 것으로 위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 그릴 창호 형태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1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세탁실)에 설치되는 덕트, 에어컨배관, 스프링클러 배관 등이 노출되거나 이로 인해 천장고가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침실1 발코니에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는 층별, 세대별로 위치가 상이합니다. • 최하층 필로티로 인해 하향식피난구는 최하층 상부 세대까지 설치되고, 지상까지 유효한 피난경로가 확보되어 있어 별도의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으나, 인허가 과정에서 하향식 피난구 추가 설치 및 완강기 설치의 요구에 따라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침실1 발코니에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는 방수를 고려하여 다소 돌출되어 시공되고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과도한 물의 사용으로 인해 하부 세대에 누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천장에 오픈되는 피난구에서 내려오는 사다리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도록 해당 공간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면적 중 서비스 면적(서비스 면적 초과 부분은 전용면적 산입)은 공급면적에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해야 합니다.
	창호	• 세대 내 및 공용부 창호의 크기, 두께, 사양 개폐방향, 개폐범위(전체 고정창 포함), 창호 프레임 등은 시공 시 선정되는 제품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외부 석재마감 구간의 단위세대 및 코어부에 설치 창호는 마감 시공을 위해 일부 창호의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출입문 재질은 결로 등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해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 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 환경 및 아파트 내·외부 마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승인 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을 통해 견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침실별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외부 창호의 유리사양 중 Low-E 유리의 설치 위치는 결로 및 단열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실외기실 출입문은 인허가 사항에 의해 FSD(철재 60분방화문)으로 반영됩니다. • 침실1(안방) 분합문은 결로방지와 무관한 내측창으로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단창으로 반영됩니다.
	전기/설비	• 세대 내 통합 분전반, 통신 단자함, 콘센트, 통신수구 및 스위치 등의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발코니의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내 가스배관은 인덕션 추가 선택 품목 선택 시 시공되지 않으며, 도시가스 공급관은 계량기까지만 설치됩니다. • 조명특화에 대한 추가 선택 품목(유상) 미선택 시 주방 천장에는 일반 매입등, 식당 천장에는 부착형 조명이 설치되고, 타입별로 설치 수량 및 위치가 상이하며, 본공사 시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기본 적용되는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여 시공되므로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조명특화 선택 시 기본 조명(일반 직부등)은 미설치 되며, 거실 및 식당 조도는 주관적일 수 있고 직부등 등의 추가 조명은 계약자가 입주 후 개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소방설비는 견본주택용이며, 본공사 시 수리계산 및 최종 승인도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설비배관과 관련하여 PD 점검구가 세대 내에 설치될 수 있고, 세대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피트층 포함)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휀이 노출됩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실외기실의 배관은 우수 처리를 위한 선홈통임) • 세대 내 동체감지기 1층, 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거실, 기타층은 거실에만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고, 후드가 설치되는 장은 수납이 제한적입니다. • 본공사 시 씽크대 하부 난방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파이프는 보온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주방 발코니의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배관경로와 선반, 가구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상부 덕트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실외기실에 세대 환기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나, 본공사 시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하향식피난구,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사업계획승인 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개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덕트 등이 노출되며,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실내로 전달될 수 있고,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연도는 기능상 외벽으로 돌출되어 시공됩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각동 PIT, 필로티 및 지상층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도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도선이 설치되고, 일부 동 및 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되며, 피뢰침에 의한 진동, 소음에 따른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무인택배보관소는 1층 주동 출입구 인근에 코어별로 설치될 예정이고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방식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보안등 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에 총 57대의 전기차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이고, 주차면에 급속 1개소, 완속 56개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될 예정이나, 본공사 시 설치 타입(완속 → 급속), 위치 및 개소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이동통신설비의 옥외 안테나 설치위치는 101동 옥상, 103동 옥상, 105동 옥상, 106동 옥상, 108동 옥상에 각 1개소 설치되며, 이동통신설비 중계 장치 설치위치는 101동 옥상, 103동 옥상, 105동 옥상, 106동 옥상, 108동 옥상과 지하1층 동전기실 3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 및 설치개소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 TV 안테나 설치 위치는 106동 코어 지붕에 설치 예정이며, TV 안테나의 위치는 수신상태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TV 안테나에 의한 진동, 소음, 전자파 등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기실 건축물 및 부지 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 및 욕실의 배기는 당해층(세대) 직배기시스템 적용으로, 배기구가 주방 외벽부에 설치되며, 기상상태나 바람에 의해 일부 공기가 세대로 유입될 수 있음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휀룸, 제연휀룸, 동 전기실, 동 통신실 등은 본공사 시 형태 및 면적, 바닥높이, 층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방식으로 세대 내 다용도실에 보일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홈IoT	• 견본주택 84C타입에 적용된 홈IoT서비스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전동커튼(배관 및 배선 포함) 등을 포함한 전체 내용은 본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홈IoT서비스(삼성 SmartThing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전용 인터넷 회선 설치 비용 등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 또는 별도 청구). • 홈IoT서비스(삼성 SmartThing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를 설치하여야 하며(통신사 무관),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스마트싱스 HUB등 개별구매이며, 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IoT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삼성전자 제공)에서 세대 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제어가 가능하며, I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스마트 가전제품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IoT 서비스 제공업체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함, 입주시 일부 기능은 IoT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내용에 준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홈IoT서비스(삼성 SmartThings) 사용에 따른 비용은 사용검사(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동별사용검사일 포함)을 기준으로 IoT서비스 제공업체의 무상서비스 기간(24개월 또는 36개월 – IoT서비스 제공업체 정책에 따라 상이함)이 지난 후 IoT서비스 제공업체의 정책에 의해, 서비스 종료 또는 유료화 될 수 있습니다.(유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IoT서비스 제공업체와 별도 공급계약 필요) • 음성인식 서비스는 홈IoT서비스(삼성 SmartThings)와 연동이 가능한 음성인식 스피커를, 가전제어 서비스는 홈IoT서비스(삼성 SmartThings)와 연동이 가능한 가전기기를 각각 입주자의 부담으로 별도로 구매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상기 음성인식 스피커와 가전기기는 제조사, 제품의 사양 및 모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홈IoT서비스(삼성 SmartThings), 음성인식 서비스 및 가전제어 서비스는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일부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서비스의 제공이 종료될 수 있고, IoT 서비스 제공업체의 사업정책에 따라 3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IoT서비스 제공업체(삼성전자)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IoT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IoT서비스(삼성 SmartThings)는 입주자와 IoT 서비스 제공업체(삼성전자)와의 계약관계이며, 시공사는 기본 인프라만 제공하는 것으로 IoT 서비스에 대한 내용 및 기술지원은 IoT 서비스 제공업체(삼성전자)에 확인바랍니다.
기타	**다함께 돌봄 센터**	•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765세대로,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55조의2에 따라 본 아파트 단지 복리시설 내에는 다함께돌봄센터 공간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영주시청에서 해당 센터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로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해당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영주시청과 체결할 예정이고,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해당 협약 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포괄 승계될 예정입니다. • 다만, 해당 단지의 관할 지자체인 영주시청이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지역 돌봄수요 등을 고려할 때 복리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거나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해당 센터의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와 관할 지자체인 영주시청 간 협약을 통해 단지 복리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해당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관련 법규 및 규정, 관할 행정기관의 지침에 따라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인 영주시청이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책임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

		체인 영주시청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에게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의 30~7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민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단지 입주민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소 후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는 향후 영주시청(영주시청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센터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및 사용료,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상기 안내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대상 단지의 세대수 기준, 입주민 자녀 우선 입소 비율 등을 포함한 「아동복지법」등 관계 법령·조례·지침이 제·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 **입주예정월 : 2030년 2월 예정**(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 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원가 상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고 지체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9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법」제48조의2 및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계획을 제출한 후에 공사 여건상 자재,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수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까지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 방문기간 시작일을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시설 안내 : 주차장,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실내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실외 주민운

동시설), 다목적실, 게스트하우스, 스터디카페, 주민카페(북카페), 지하 창고 등의 복리시설
* 골프연습장에는 일반타석(6개소), 양손타석(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터 및 휴게시설, 석가산 수경시설 등의 조경 및 시설물은 실시설계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견본주택 내 모형 및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종류 및 면적은 계획변경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내 모형 및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보수는「공동주택관리법」제36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감정평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5항에 따라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기관
- 의뢰자 :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
- 건명 :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1059-10번지 일원 소재 신축예정 부동산
- 평가서번호 : 가온 2610-01-60359
- 감정평가기관 : ㈜가온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발행일자 : 2026.11.06.
- 감정평가액 : 8,616,185,500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트리븐 가흥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1282026-101-0011300호	**금262,243,8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

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당사가 본 아파트 사업장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결제관리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분양대금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 분양자(또는 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또는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의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기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공사,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기준 충족 여부	비고
창 및 벽체 등 단열, 기밀성능,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충족	
열원설비		충족	
창 면적비		충족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충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충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 (다목)	충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충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충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충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적용
	고효율 전동기 (라목)	충족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 (마목)	충족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충족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충족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충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고효율 변압기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충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다목)	충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미충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024-1026호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충족	단지 내 공용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른 자동 점멸 스위치 설치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2.70m	2.70m
지하 2층	2.30m	2.30m

※ 본 아파트의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공사시 부착물 등에 따라 실 유효 높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건축법」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내진등급	최대지반가속도
I	0.2g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영주시 가흥동 1059-10번지 일원 주택건설
건축주	한국자산신탁㈜
준공일	2029.11.22. (예정)
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261번길 30 일원
층수	지하2층, 지상29층
연면적(㎡)	133,824.89
건축물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해원 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GASEED-F-2026-1076-6
인증기관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유효기간	2026-11-03 ~ 사용승인일(재품질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당선 날짜까

인증 등급	
인증등급	일반(그린4등급)
인증용도	신축 주거용 건축물 (공동주택)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50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516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일반, 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 평가]

종합등급 ★

2026년 11월 03일

(사) 한국그린빌딩협의회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영주시 가흥동 1059-10번지 일원 주택건설	2. 신청자	한국자산신탁㈜
3. 대지위치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261번길 30 일원	4. 성능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과 외부보행자 전용도로와의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
14. 방범안전 콘텐츠	★
15. 주차공간 추가 확보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11월 03일

(사) 한국그린빌딩협의회장

■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통신감리	소방감리
회사명	㈜휴먼텍코리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엠피코씨엠	㈜씨엠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대성종합기술단
금액	금 3,957,966,100원	금 559,936,900원	금 231,000,000원	금 831,910,000원

※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자 : 한국자산신탁(주)
- 등록업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카이트타워)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70012
- 사업방식 : 차입형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분양대금 완납 시 개별등기
- 사업계획승인 : 영주시 2026-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2026.11.16. 제1차 변경승인)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신탁사)	위탁사	시공사
회사명	한국자산신탁(주)	(주)에스케이리츠	두산에너빌리티(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로 86번길 21, 2층 (가흥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 (귀곡동)
법인등록번호	110111-2196304	175611-0003055	194211-0000943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대수 : 총 1,128대(아파트 1,126대, 근린생활시설 2대)

※ 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차입형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본 사업은 위탁자인 ㈜에스케이리츠(시행위탁사)가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매도인 겸 시행수탁사)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시행위탁사인 ㈜에스케이리츠이고, 한국자산신탁㈜는 차입형토지신탁 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 중 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본 조에 관한 사항은 본 모집공고의 다른 내용에 우선합니다.
- 본 사업은 시행위탁사인 ㈜에스케이리츠, 시행수탁사인 한국자산신탁㈜ 그리고 시공사인 두산에너빌리티(주)간에 체결한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근거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한국자산신탁㈜' 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시행위탁사,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급대금을 납부)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에스케이리츠 및 수탁자 한국자산신탁㈜가 체결한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입니다. 본 공급계약 대상재산에 대한 시공상의 모든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후 하자를 불문하고, 오시공, 미시공 등을 포함)은 시공사인 두산에너빌리티(주) 및 위탁자 ㈜에스케이리츠가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또는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준공 전·후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한국자산신탁㈜가 매도인의 지위, 사업주체로서의 지위 및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오 시공, 미 시공을 포함한 일체의 하자보수의무, 공법상 의무 및 매수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등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사인 ㈜에스케이리츠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고, 공급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시행위탁사인 ㈜에스케이리츠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대금 반환, 입주지연 시 지체상금, 매도자의 하자책임, 소유권 이전 등)는 시행위탁사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에스케이리츠가 부담합니다.
- 한국자산신탁㈜는 중도금 대출금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우선수익자 지급금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트리븐 가흥 견본주택(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765, 766 / ☏ 054-633-8898)

※ 보다 자세한 공사의 범위 및 마감재목록 등은 사업주체의 홈페이지(https://www.trivn-doosan-gaheung.com/)에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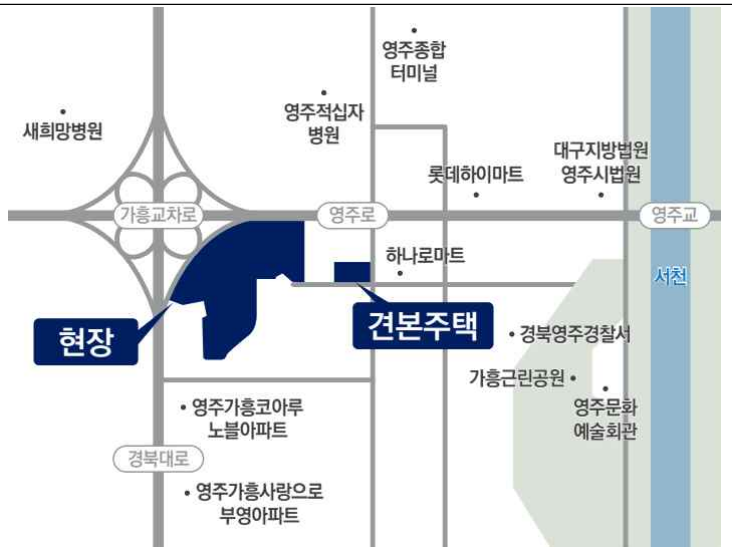

견본주택 :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765, 766
현장 :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1059-10 일원
트리븐 가흥 분양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trivn-doosan-gaheung.com/
분양문의 : 054-633-8898